

제439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9월3일(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1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1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소위원장 유상범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전문위원, 보니까 지적사항이 2개가 연결된 사안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연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같이 설명해 주는 게 위원님들이 나중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미리 정리하는 요령을 좀 보여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입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뒤에 서 계신 분은?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 총 39건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6건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제주 4·3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터파기 공사 추가 작업과 건축 시공사 법정회생 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여 2025년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29.0% 수준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잔여 과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현재 적격심사 기준의 보완 가능성에 대한 점검 노력을 병행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시공사가 법정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까, 이 사업?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부도가 나 갖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됐지요?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시공사를 중간에 교체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종욱 위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종욱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기간이 지연됐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 1년 정도 돼 갖고요 지금 공사가 원활하게, 이게 작년 사정이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차관님,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말해야지 잘 진행됐다고 그러면 그 설명이 아예, 우리보고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요.

○소위원장 유상범 적어도 그러면,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실집행률 정도가 한 3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확인해서 의원실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여기에 이인선 위원님께서 적격심사 기준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면 중간에 시공사 부도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 낼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마 그 기준을 좀 강화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지만 이런 사업은 행안부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제한경쟁입찰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큰 공사 사업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제도개선을 한다고 그래서 무슨 제도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적격심사 기준을 바꾸겠다는 건지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보고받고 하시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상범** 이종욱 위원님은 일단 보류하고 적격심사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정하자 이런 취지이신가요?

○**이종욱 위원** 예.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성희 위원** 부도가 날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데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다 높여 놓으면 재정상태가 아주 좋은 훌륭한 큰 기업들만 다 공사를 차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달청에서 그것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건데 부도가 났으니까 너희 주의, 책임져라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행안부가 수의계약을 한 건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한 건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더 엄격하게 해 버리면 과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런 경쟁을 통과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부에 우리가 립을 좀 줘서 공무원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사고가 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고를 수습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양쪽 위원님 의견이 다 일리 있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따로 보고받은 게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현재 공사는 공정 대비 40%까지 진행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지금 이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적격심사 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제도개선을 요청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그 보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것을 주의로 같지 제도개선으로 같지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입장을 말씀하신 거지요. 차관님의 대답에 대한 이종욱 위원님의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이종욱 위원** 저는 이것 가지고 적격심사 기준을 보완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보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답변하는 데 제도개선을, 지금까지 부처에서 보면 제도개선이라는

것을 사실상 본인들이 그냥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하겠다 정도로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제도개선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인선 위원 주의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해도 괜찮아 보 이기는 하는데 꼭 제도개선으로 가야 될지,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으로 갈 사안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김성희 위원** 아니, 이것 주의를 준다고 하면 부도나는 걸 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기준을 더 높이고 높여서 결국, 예를 들면 현대건설 이런 데서 공사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이럴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할게 요.

○**김성희 위원** 예.

○**소위원장 유상범**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결정하고.

손을 그렇게 여러 번 드니까 안 시킬 수가 없네요.

○**재정경제부국고실장 황순관** 제가 국고실장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 좀 아는데, 국가계약하고 지방계약하고는 법체계는 다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이 같이 마련돼 있지만 지방은 조금 더 허들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얘기하듯이 제도개선 여지는 좀 국가계약보다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류하고, 다음 주에는 보류한 것 재심사를 할 테니까 행안부에서 이종욱 위원님께 우리가 개선, 당장은 마련은 못 하겠지만 이런 개선하는 방향은 한번 검토하겠다는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보고 가능하다고 보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일단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27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인데요. 연번 3번하고 다음 페이지 28페이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입니다. 두 사업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지급관리시스템 구축비·운영비·위탁비·민원대응비 등 행정집행비용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재정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금 규모뿐만 아니라 지급체계 구축비, 시스템 운영비, 위탁비, 민원대응비 등 정책집행에 수반되는 총정책비용을 산출하여 예산

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것. 여기에는 시정·주의·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직접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세지출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때 정책효과와 수단별 행정비용, 집행효율성 등을 비교·분석하여 예산안에 첨부할 것. 여기에는 시정·주의·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관리시스템 구축은 과업이 전담기간을 거쳐 민간업체로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관리 단계 추가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담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와 민간에 재위탁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개하고, 핵심 업무 재위탁이 반복될 경우 기관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것. 여기에는 시정·주의·제도개선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사안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네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이 부분도 두 가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우리 이렇게 합시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 가지고 그랬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지적·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사실 첫 번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집행비용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추경 편성할 때 지급시스템 개발과 운영비, 콜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한 바가 있고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책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해서, 연구용역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안에 더 정밀하게 첨부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 구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관리시스템 구축을 이게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에다가 위탁 주고 거기서 다시 전문업체가 시스템을 개발하게 해서 이중 위탁 아니냐라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기존의 시도행정시스템, 서울시스템을 KLID라고 하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신규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함께 개발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연계해야 공무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위탁을 하게 될 때 그 사유와 적정성을 아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다음에 그 뒤에, 연번 4번의 이 부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두 번째 설명드린 게 4번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 가지 논점이 섞여 있는데요.

첫 번째, 앞부분에 있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실제 행정집행비용까지 다 봐야 되겠다. 부과된 비용 전체를 포함해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는 한 사업에서 사실 이렇게 다루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행안부 차원에서 해야 될 건지 재경부나 예산처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재정당국에서 이런 거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고유사업이 있고 그 고유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유발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국회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를 던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도개선이라는 용어가 참 애매한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큰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큰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제도개선이라는 게 제일 밑에 아주 경미한 시정요구처럼 해석이 돼서……

위원장님, 이거는 하여튼 정부 전체의 어떤 그런 입장이나 그런 거를 저희 예결위 차원에서 한번 들어 보고 싶고요, 이거는 앞으로, 이런 요구나 합리적인 그런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부가 대응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쪽은 지역정보개발원 이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중간에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직접 할 일도 밑에 하나 끼워 가지고 그냥 위탁, 중간 위탁이지요. 중개기관 비슷하게 하나 넘겨주면 그 사람들은 필요한 무슨 간접경비라든지 이런 걸 고리 좀 빼고 다시 또 위탁업체를 재위탁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사업추진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처의. 이거는 행안부, 지역정보개발원의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저는 사실은 조금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국가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는 측면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 측의 정리된 입장을 듣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도개선이니 시정·주의 이것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닌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민주당 위원님들.

○김성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으시고 결정하시도록 보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거와 관련해서 재정경제부에서 나와서…… 지적사항의 첫 번째 문제는 사실은 행정비용이 너무나 커지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몇천억 나왔던 것 같아요, 민생소비쿠폰 할 때도. 그런데 이게 민간에 재위탁까지 가는 이런 구조도 사실은 이게 결코 행정비용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정경제부에서

는 그 입장이 어떤가요?

○재정경제부국고실장 황순관 저희가 직접 검토하고 싶은데 예산 기능이 없어져 가지고……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도 기획예산처로 가야 되나?

○재정경제부국고실장 황순관 예, 기획처에서 해야 될 업무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았어요.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이 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처에서 대규모 재정이 지출되는 사업에 대한 나름 성과관리, 성과평가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 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말씀 주신 이런 사업들까지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비용 또는 기존과 달리 추가된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말씀하세요.

○정태호 위원 아까 답변하는 중에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정책 집행비용, 그러니까 추정 편성 시에 그 비용에 대한 자료는 제출은 하셨다고 그랬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뭔가 부족했다라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기억나시겠습니까만 작년에 국민주권정부가 새롭게 들어섰을 때 경제위기가 심각했고 또 민생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이게 첫 번째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해서 13.5조를 줘야 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해왔던 업무면 여러 가지 더 정확한 추계량 비용 산출을 할 수 있었는데 기억해 보시면 2020년 코로나 때랑 21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자료를 갖고 산출을 해서 비용을 내드렸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도 개발·발전됐고 저희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년 지나 보니까 조금 이게 정확한 산출이 아니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할 때 연구용역비를 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세워 주셨습니다. 2억 원, 5억 원 넣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하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비용 추계나 산출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태호 위원 여하튼 자료는 제출하셨는데 뭔가 미비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했고 지금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 보고를 할 예정이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위원님.

○정태호 위원 그래서 보류하는 건 동의합니다마는 이미 제도개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도개선이 적절하다라는 개인의 의견을 밝힙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차관님께서 지난번에 만들면서 사실 총 집행 비용의 문제가 부정확했던 부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시니, 곧 예산이 11월 달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부터 예산 심사를 하는데 10월은 국정감사 중이니까, 아마 웬만큼 보완이 된다고 하면 9월 달쯤에 보고가 가능하리라고 봐요. 결정할 테니까 제도 개선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개선안을 9월 달에 보고를 해 주시면 다음에 예산안 심사에 우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깐요. 9월 달 보고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지금 또, 올해까지는 기억하시겠습니까만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유사한 구조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9월까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연구용역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간 내용이라도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요. 그러면 되는 대로 9월 중에는 중간 진행 상황을 특히 이종욱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는 걸로 일단 하시고……

○이종욱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게 큰 이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기도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정부 방향,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 재정부나 기획예산처 차원에서 이걸 제도개선 이슈로 잡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정도는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 뒤에 말한 재위탁, 이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일 받으면 자기가 안 하고 계속 떠넘길 사람만 먼저 생각해요, 용역 주고. 용역 준다고 그러고 한 6개월 벌고, 그다음에 산하기관 시켜 가지고 ‘너가 좀 해 봐. 그리고 돈은 우리가 좀 따 줄게’ 그렇게 그냥 예산 따서 배급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그런 행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결산은 재정부니까 재정부에서 최종 입장은 나와야 될 것 같고 내용은 아마 예산처나 다른 부처에서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잘 협조해서 가지고 저희들 이것 최종 결정 내리기 전에, 그 정도는 하루이틀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방향, 이것 하겠다, 어떤 식으로 안 하겠다 그것만 입장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적어도 방향성 정도는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금주 중에 가능하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건 보류하고 이종욱 위원님 보고받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들겠습니다.

이 사안 보류하고 재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31쪽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이고요.

지적사항입니다.

2025년 추경을 통해 안동·영덕·의성 등 3개 지역 5개 지구에 국비 100억 원, 지방비 25억 원 등 125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2026년 3월 기준 실행률은 14.9% 수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평가한 후 사업비를 집행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적사항에는 동의를 하고요. 유형은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이 됐고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지금 설계 같은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률은 낮습니다. 마는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아직 착공은 안 됐습시다마는 9~11월 중에 착공이 되면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추경 해 놓고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됐다는 말씀이지네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허성무 위원 원래 이게 민원이 많은 거라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압니다. 그럼에도 집중해서 빠르게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제도개선 지적을 해 놓은 거니까요.

주민들과 협의는 끝난 거지요, 이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빠르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게 추경이 언제 됐지요? 작년 10월인가 돼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작년에는 집행할 기회가 없었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마을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이 불탔습니다. 그 불탄 마을에 새로 도로를 깔고 상하수도를 놓다 보니까 토지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해야 되는 절차라든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이 목표 연도가 언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7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을 사업들이 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 목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로 보면 얼마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고 공사가 착공돼서 하면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 해소는 27년까지 해서 완료가 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27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간상의 문제일 뿐이고 이게 마을 단위로 협상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제도개선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러니까 그와 같은 예산은 이미 예정된 예산이고 그걸 굳이 그해 단년도에 꼭 써야 될 추경으로 편성해 가지고 결국은 사실상 일반예산처럼 써 버리면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김성희 위원** 그때 불나서 쓸 돈이 없어서 당장 가서 배정하라고 했던 요구는 전북 지역의 의원들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셨던 건데 추경 편성 안 했으면 안 하는 대로 이 건 정부가 혼났을 일일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때는……

○**배준영 위원** 그런 지역에 상관없이 어쨌든 산불이 났고 아마 이것을 모두 다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사고 수습과 관련된 추경은 좀 감안할 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배준영 위원도 제도개선으로 정리하자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배준영 위원**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허성무 위원님의 의견은 사실은 2027년 말에 준공한다는 것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의 제도개선이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대신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지연된다는 느낌이 안 나게 그렇게 여러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2025년에서 2027년이면요 2년 동안 남의 집에 살아야 돼요. 남의 집이라는 게 사실은 임시주거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느끼는, 특히 조금이라도 이게 지연이 되면 느끼는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분노가 커져요. 그건 좀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34쪽입니다.

34쪽 연번 13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고요.

지적사항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2024년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반환 기간 내 반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기한 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정산내역 확정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여기에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이것 시정요구 주의였는데요 저희가 제도개선을 요청드리려고 했다가 주의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용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위원장님, 지나간 것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예, 그렇게 하세요.

○정태호 위원 아니, 이것부터 결론 내리고……

○소위원장 유상범 주의 수용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제가 첨언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항상 보면 그 이후의 반환 절차, 보조금 반환 절차 이것 가볍지 않습니다. 이게 각 기관의 도덕성 문제, 책임성 문제가 다 연결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면…… 끝나고 나면 사실 이것 잘 안 돌아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연하게 계속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특별히 신경 써 달라는 차원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안 받는 건 아니고 전액 이자까지 쳐서 반납은 다 받고 있고요. 다만 그게 12월을 넘어가는 게 있어서 앞으로는 그걸 미리 예측해서……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가지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원래 제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게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건 잘 신경 쓰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유상범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지나간 것 중에 32페이지 11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 제도 개선으로 넘어갔는데요. 이거는 조금 중요한 거라서, 내용을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금 기관 내 여유자금 192억이 있다는 거고요. 이 돈을 어떻게 만들었냐? 용역에서 간접비를 40% 떼 가지고 만들었다는 내용인데 몇 차례 지적된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대부분 정부수탁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부에서 계약을 하는데 간접비를 40% 뺐다는 말은, 보통 10% 내지 15%, 20% 정도인데—대학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40% 뺐다는 말은 그만큼 정부한테 더 받아 왔다는 말인지, 아니면 연구를 수행해야 될 사람들의 정당한 대가를 추가적으로 가져가서 연구가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건지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놓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다른 걸로 한다고 이야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나쁜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조금 부처한테

입장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도개선으로 넘겨 놓으면 레이더망에서 사라지니까 일단 보류시키고 행안부의 처리 계획을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상범 일단 부처 의견이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에 보면 간접비 상한비율을 하향 조정해라, 그리고 기관의 자체수입에 적극 반영해라, 적정 규모를 준수하라고 했는데 기관이 수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부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로 보이는데 한번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제도개선은 뭐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설명드리면 연구용역비를 더 받은 건 아니고요. 이것을 이제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를 받게 돼 있는데 그 받은 인건비를 일반적으로 직접비에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간접비로 넣은 거지 돈을 더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비 계상이 올라간 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은 직접비에 계상하도록 제도개선을 명확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도 간접비에 넣어서, 인건비를 직접비에 안 넣고 간접비에 넣어서 간접비 계상이 높고요. 또 다른 연구원은 직접비에 넣어서 간접비 계상이 한 10%, 20%대인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하고 이럴 때 인건비를 직접비로 넣어서 산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더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종욱 위원 그건 설명이 안 되지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생겼어요, 200억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거는 한 해에 생긴 게 아니고요.

○이종욱 위원 즉 그것 누적됐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누적된 겁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은 이런 돈이 없잖아요. 다른 기관들 전부 모든 기관들이, KDI, 조세연구원 다 200억씩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기관은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었냐는 거거든요, 제 문제 제기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것을 보관하는 건 뭐냐면 청사 같은 게 노후화되면 시설을 옮기거나 이럴 때 해서 적립해 두는 기금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주에 간 지 지금 한 십몇 년 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청사 신축할 때 어차피 국비가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통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돈 가지고 나중에 청사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지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게 출연기관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종욱 위원 아니, 출연기관이 이렇게 돈을 마련해 가지고 청사 지을 돈을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출연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문제 제기한 거예요. 탄 살림을 이렇게 차리는 출연기관이 있냐고요. 수지차보전기관 아니에요, 대체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보통 연구원은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출연금 받은 것만

큰은 정부에서 위탁하는 정책과제를 수행하고요.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정책과제를 한 두세 건씩 다 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자체 추가로 받는 수탁과제는 받지 않습니까, 금액을 정해서.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적립해 놓는 겁니다, 자구책으로.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이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 여러 군데서 돈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정부나 예산처에서. 각 기관에 이렇게 200억씩 여유자금 가지고 있는, 집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고, 정부출연기관이니까 필요하면 이 돈 그냥 가지고 오세요. 환수하고 몇 년 치 출연금 안 주든지 용역 공짜로 시키면 되겠네요. 뭐 하려고 이렇게 200억씩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정부회계도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제가 봐서는 결코 잘못된 지적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정부출연기관에서 이렇게 여유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데는 없지요? 누가 답할 수 있나?

○재정경제부국고실장 황순관 제가 R&D 예산을 해 봐서 그러는데, 정부 출연연의 일정 부분 잉여금은 쌓아 놓고는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해당 기관의 출연금 규모를 조정하기는 합니다.

○이종욱 위원 조금이지요, 조금?

○재정경제부국고실장 황순관 그러니까 규모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일단 행안부에서 이 제도개선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아마 넘쳐나려고 수용을 한 것 같은데 단지 여유자금 마련 과정에 있어서 이종욱 위원님이 제기한 의혹과 행안부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 간의 갭이 많이 커요. 그래서 이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을 하고, 다만 방금 그 여유자금 구성 경위에 대해서 이종욱 위원님이 굉장히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니까 행안부에서……

9월 중이면 되겠습니까,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예.

○소위원장 유상범 어차피 이걸 예산에 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요? 9월 중에 이 여유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방금 차관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가지고 정리해서 이종욱 위원님에게 보고하는 걸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제도개선 결정을 그대로 오늘 하고 다만 이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이종욱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여유자금 구성 경위에 관련해서 오늘 설명한 내용과 이종욱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내용의 사실관계는 파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별도로 9월 중에 보고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은 37페이지입니다.

연번 16번 과거사 관련 사업 지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 중 위패봉인관 사업은 사업이 지연되어 2023년 예산이 2024년으로 이월되고 다시 2025년으로 재이월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 중 노근리 사건 명예회복 사업지원 영동군의 계약 체결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 중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 간접보조사업자인 영동군이 평화공원 관리운영 계약을 2026년 8월 26일까지도 체결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평화공원 관리운영(민간위탁) 예산의 직접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존 예산의 비목을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변경하는 한편 2027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민간 경상보조로 편성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간접보조사업자인 영동군이 평화공원 관리운영(시설보수) 사업의 예산집행에 있어 사업비를 이월 및 재이월하지 않고 당해연도 내 집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여기에도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간접보조사업자인 영동군이 노근리 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여기에도 정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부 이견이 있을 만하겠어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들께서 시정과 주의로 시정요구유형을 주셨는데요, 주의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근리 사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6·25 당시에 미군의 오폭으로 인해서 노근리 주민들이 희생당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재단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지금까지 영동군을 통해서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재단으로 줘서 재단에서 그 공원 관리를 해 왔었는데요. 재작년부터 해서 재단하고 영동군의회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줬는데 영동군의회에서 그걸 승인 안 해 주고 재단에다 하지 말고 영동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 재단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저희가 중재 역할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구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군에다 주지 말고 민간단체에다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지금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민간단체로 비목을 바꾸라는 부분이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처랑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저희는 민간에다 그냥 주겠습니다’ 했는데 기획처, 재정당국은 그러면 민간단체보다는 충북도에다 차라리 줘서 충북도가 중간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력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입장에서는 주의를 받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내용인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는데요. 이분들이 또 워낙 고령인데,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데, 의회 군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예우를 안 했거나 갈등이 생겨서 군의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여기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분들은 이게 우리 선조나 우리 가족들이 희생돼서 만들어진 건데 왜 이렇게 하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고 일부 의원실에서도 관여를 해 주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이, 과거사 문제가 중재 같은 게 참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최기상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제기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갈등이 생길 때마다 행정부와 재정당국 보조금을 민간에 직접 주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에다 보조금을 직접 주는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재정 운용의 큰 원칙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기획예산처도 그래서 반대하는 걸 거고,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잠시 말씀을 드리면……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아직 얘기 안 끝났으니까…… 그냥 ‘예’만 하면 되는데 뭘 또 잠시 얘기를 해.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저희들이 행안부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자치단체 내에서의 갈등…… 여기 다 지역구 가지고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행안부의 시정요구사항으로 가는 게 맞느냐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간사님부터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제가 한번 확인을, 여기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나 민간 경상보조나 아무 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기존 사례는 어때요? 많이 있잖아요, 이런 재단이나 사단.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보통은 중앙정부가 이렇게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서 주는 부분은 5·18 재단이라든지 이것만 법에 의해서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게 왜냐하면 건물이나 이런 것은 또 군에서 지어 줬습니다, 사무실이라든지 공원 관리는. 그러

니까 영동군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이런 것 할 때 좀 잘해 드렸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나중에 확인을, 보고를 받아 보니까 거기서 좀 갈등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종욱 위원** 그래서 사례가 있어요? 바로 간 사례는 없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 것은 5·18 쪽 말고는 없습니다.

○**이종욱 위원** 5·18은 별도 법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소위원장 유상범** 기획예산처 한말씀하세요. 미안해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군 지자체와 행안부와…… 사업 시행 주체는 행안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안부에서 그 해당 군과 또는 재단과의 협의안을 가져오면 저희들은 최대한…… 어떤 안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먼저 답변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 군, 재단 또 행안부 차원의 적절한 협의안을 가져오면 저희들은 어떤 안이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돈 주는 사람이 돈 줄 때 책임질 얘기 나오면 싹 빠지네. 그렇게 하면 결국 행안부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얘기나 똑같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전부 재단에다만 줘서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깔끔한데요. 그게 아니라 영동군 소유의 건물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군이 그것은 돈을 내라든지, 사용료를 하든지, 재단에서 이용 못 하겠다 하는 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동군을 배제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영동군은 재단 의견을 들어주는데 최종 사업계획 승인이나 이 부분을 군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행안부가 나와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조정해서 노력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말도 안 하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는 충북도를 좀 끌려고 했는데……

○**소위원장 유상범** 충분히 알아들었고, 아마 최기상 위원님도 뭔가 해결하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주문인데 행안부에서는 주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입장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안부가 이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업무 추진에 문제가 발생해서 된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한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주의 정도로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 행안부에서 받아들인 게 있으니 그냥 가자 그러면 갈 거고, 아니면 다른 의견 내시면, 삭제하는 의견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던져 봅니다. 그냥 갈까요?

○**김성희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삭제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삭제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본인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내가 너무 행안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차관이랑 나랑 관계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주세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태호 위원** 이런 사항들은 좀 기다려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조치를 중앙에서 치면 괜히 밑에 내려가 가지고 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삭제하고 가는 게 맞아요.

○**소위원장 유상범** 박 위원님?

○**朴芝源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은 굉장히, 왜냐하면 최기상 위원님께서 제기한 거고 이것 분명히 이해관계자들이 볼 건데……

○**朴芝源 위원** 그런데 최기상 위원님 의견을 한 번 확인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예 빠져 버리면 좀……

○**정태호 위원** 그것은 제가 최기상 위원하고 상의를 할게요. 여기서는 결론을 내려 주시고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럴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결론 내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삭제하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사합니다.

○**이종욱 위원** 첫 사례네.

○**소위원장 유상범** 행안부를 상대로 첫 사례가 나와서 마음에는 안 드는데……

(웃음소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해서 중앙정부가 과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다 사실대로 말한 것이어야 돼요, 김 차관. 괜히 또 여기서…… 거기에 김 차관 설명한 것, 이것 다 나가잖아. 사실대로 한 게 아니라는 땀 소리가 나오면 우리도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큰 틀에서 제가 다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재단은 계속 행안부가 나서서 영동군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해 달라는 거고요.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직접적인…… 우리가 군에다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권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소방청이지요?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안녕하세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입니다.

○소방청운영지원과장 윤강열 안녕하세요?

운영지원과장 윤강열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소방청장은 계시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차장직무대리는 드문데, 차장이 없어.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차장이 공석이어서 기획조정관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소방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 총 11건이 제기되었으나 소방청이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 보고 대상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래도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여당 간사님께서 소방청에 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지요.

○정태호 위원 워낙 고생들 하고 있으니까 잘하신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왔으니까 격려라도 해 주시라고, 마이크 켜고.

○정태호 위원 갑자기 내가 뭐를……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왔는데 그냥 보내기는 그렇잖아.

○정태호 위원 그냥 빨리 보내 드리는 게……

(웃음소리)

○이종욱 위원 수용했다고 질문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몇 번입니까? 53페이지, 국립소방병원.

어제 보훈부하고 비슷한 사례인데요. 추경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연말에 인건비로 이용한 사례, 비슷한 사례인데 앞으로 이런 사례는 거기서……

예산처에서 잘못했지요. 그렇지요? 이것 이용 허가해 줬지요? 이용은 예산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연말에 이용 들어왔는데,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에 인건비로 이용하겠다고 들어오면 허가를, 승인을 안 해 줘야지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유념해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지침이나, 알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이종욱 위원 아주 대표적으로 나쁜 사례잖아요. 다른 재원을 찾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못 주든지 해야지 추경으로 급하다고 국채 발행해서 해 놓고 그것을 나중에 인건비로 연말에 그것도 이·전용하는 것은 예산처에서 막아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적극 참고·반영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참고는 무슨……

○소위원장 유상범 잠깐만, 잠깐만. 답이 그렇게 나오면 안 돼.

지금 추경을 한 것을 이용하고 전용하는 게 예산 하면서 어제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용 아니에요. 적절치 않다는 것은 기획예산처도 인정을 하지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그런데……

○소위원장 유상범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국회에서 예산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만들겠다고 하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을 말씀해 줘야지. 이것 반복되는 거예요. 참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참고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고요.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기본 인식을 가지니까 참고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개인적인 지적이 아니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답이 나와야지 앓아 가지고 반복되는 지적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얘기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늘 그래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뭐하러 기획예산처를 참여시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욱 위원님이 이렇게 강하게 반복 얘기한 게 있으니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유상범 예.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또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그런 케이스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적극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한 말씀…… 그러니까 연말에 이·전용 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인건비 주겠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 간에 웬만하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원을 보라고요, 재원을. 인건비로 해 주는데 국회 추경으로 가져간 돈은 잘라 놓고, 추경으로 해서…… 저는 걱정되는 게 추경에서 남은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인건비 하려고 이걸 추경을 집행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원 찾아와라, 그렇게 최

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잘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소방청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어 가지고, 소방청이 국가직화 됐었잖아요. 그게 2019년인가요, 20년인가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20년입니다.

○정태호 위원 그때 취지가 물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차이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 또는 안전 능력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걸 국가직화 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자치단체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직화 했던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좀 해결이 되고 있나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직 이후에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의 근 5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5년, 6년이 지나면서 그 당시에 충원했던 인력들이, 그때 기재부에서 보조해 줬거나…… 하여튼 그 인력들이 급수가 올라가거나 진급을 하거나 하면서 사람수는 변하지 않더라도 인건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는 지방 소방 예산에서 약 69%, 68% 정도가 인건비 비중이었는데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75%가 넘어갑니다.

즉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소방에서 하고 있는 장비를 사거나 소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홍보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을 사업비라고 하는데 사업비 포션이 점점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건비에 대한 세원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국비에서 전액 주거나 이런 식의 일단 장기적인 대책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기예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나요?

○소방청차장직무대리 김재홍 일단은 이걸 본격적으로 의제로 삼아 가지고 기예처랑 협의한 사항은 없는데요. 그래도 실무적으로 경기도에서 도지사님이 지방재정에 대해서 이슈화 하시면서 그 정도만 공감대가 있지 구체적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은.

○정태호 위원 잘 챙겨 봐야 되겠네요.

○소위원장 유상범 잘 챙겨 보신다는 말씀이 가장 와닿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입니다.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유승주**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유승주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인사혁신처에 대해서는 총 1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고 인사혁신처는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다만 감사요구안이 1건 제기되어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요구사안은 공무원연금공단 주식투자 관련 정부의 개입 여부 감사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인사혁신처입니다.

감사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공무원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증가는 공무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이 정부의 중시 부양 목표 달성을 위해 위법·부당하게 동원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국내 주식 비중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요청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국가재정법과 자산운용지침이 정한 의사결정 위험관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입니다.

저희 지적해 주신 공무원연금기금 전략적 자산배분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에서 연금공단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특정 기관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반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전략적 자산배분안이라는 걸 매년 바꿨니까? 어때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매년 5개년 계획인데 그 전년도 10월 정도에 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자산배분안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을 얼마에서 얼마로 상향 조정했지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24년 말에 배분된 부분을 보면 26년에 11.6%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작년 10월에 배분안을 새로 하면서는 26년 12.6%로 1%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종욱 위원** 1% 증가했다?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이종욱 위원** 자료 보니까 매년, 26년은 1.6% 증가했고 27년은 당초 계획보다 1.9 그 다음에는 2.8%, 3.6%. 그래서 1.6에서 3.6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이종욱 위원** 전략적 자산배분안을 어떤 무슨…… 전 기금이 다 그렇거든요. 어떤 지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소폭 조정되는 부분은 당시의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주식 비중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금융자산운용지침, 연금공단에 있는 운용지침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파생상품 거래라든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큰 부분에 대한 것은 제한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자산배분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원칙만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모든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내지는 보이는 손이 지침을 주거나 기준을 내리거나 국내 주가 부양을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오르다가 지금 국민들 다 거덜 나고 개인 재산 시티은행에서 55조 털렸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청와대 인사도 했고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투자 안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무원연금에서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것도 더 문제잖아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국민들 보고는 하라고, 그러면서 망가지는 거 보면서 즐거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 정부의 어떤 의도적인 주가 부양 정책이 뒤에 보이지 않는 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거는 전 국민의 지금 1번 관심사항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니까? 부동산 정책하고 주가, 주식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상범**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금 이거 운용하는 데가 자산운용위원회인가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여기에 지금 자산배분안을 결정하는 곳이 자산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자산운용심의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게 다수가 외부 위원이라고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서……

○**김성희 위원** 관련해서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정부로부터 혹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라 이런 증언이 나왔거나 혹시 관련된 보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아니요,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게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말씀하셨는데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를 추정하고 있나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지금 국내 주식 보유액이 1조 7600

억 정도 됩니다.

○**김성희 위원** 우리 지금 코스피 총액이 한 3000……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3400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성희 위원** 그러면 0.05% 정도 비중인 거겠네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지금 비중을 늘린 것은 1%p 늘리신 거면 0.05%를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기준으로 하면 0.0005%를 늘리신 거네요?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예, 그 부분 기준으로 보면……

○**김성희 위원** 하여튼 대략……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이렇게 늘리면 국내 증시가 부양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공무원연금공단이 노력할 거면 좀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노력을 했을 거라면 최소한 10%p 정도는 늘려놔야 될 것 같은데.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그 정도의 여력도 없는 거고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그리고 운용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정돼서 그대로 운용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로 이렇게 바뀌라 이런 지시에 따라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연금공단이 주식 투자 비중을 이 정도 늘려서 국내 주식시장을 부양할 거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권력자가 지시했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1%p밖에 늘지 않았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심만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할 건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소위원장 유상범**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상황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자산운용심사위원회가 물론 민간인도 많이 참여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민주당 정부를 보면 이런 위원회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민간인을 늘려 갖고 예전에는 재경부장관이 직접 책임지고 했던 것을 민간을 통해 갖고, 오늘 공공기관 또 통폐합 발표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랑 같이 얹혀 갖고 누구 책임인지 모르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점점 벌어진다.

그래서 1% 정도가 는 게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연금이 어떤 돈입니까? 앞으로 평생을…… 생계와 관련된 자금인데 이거 겨우 1% 늘리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가버이 보는 것은 맞지 않고, 저는 위원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해서 한 거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위원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심층감사를 통해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고 왜 이런 결정이 일어났는지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일단 양쪽……

정태호 간사님.

○정태호 위원 저는 감사원의 감사는 대단히 절제 있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많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적극행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적극행정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원 감사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못 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지나친 감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야말로 이 공단도 하나의 투자자거든요, 자기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시점에서 놓고 보면 올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마 삼척동자도 예측을 다 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요.

그래서 투자자로서의 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 더더구나 그 결정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보면, 그것을 감사를 하겠다면 앞으로 이 운용위원회의 위원들이 아마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하면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투자 자체를 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감사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하나만 확인해 봐도 될까요?

자산운용위원회 설치를 언제 하셨습니까?

○인사혁신처차장 김성훈 그건 재정법에 따라 설치는 돼 있는데요. 연금공단에서 나와 있는데 혹시……

○김성희 위원 예.

○공무원연금공단경영지원실장 권승진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자산운용위원회는 저희가 기금 운용한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을……

○김성희 위원 연도를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경영지원실장 권승진 연도는 확인하고 바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2000년대 초반이지요, 최소한?

○공무원연금공단경영지원실장 권승진 예, 최소한 그 이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일단 위원님들 양쪽의 의견이 굉장히 배치가 되는 상황이고 대립이 돼서 이걸 보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찌 됐거나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인한 부분에다가 우리 주가 폭락의 주원인인 국민연금공단 리밸런싱 기능을 사실은 포기하면서 주식이 급등했던 부분 이것 굉장히, 그 시기가 다 공무원연금공단하고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적 의혹이 많아서……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위원님,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자산 배분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제79조에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해서 국회 상임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자산운용지침 안에 투자 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2025년에 11.6%로 돼 있던 것을 2026년부터 30년까지 12.6%로 1%p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가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연금의 전체 시총 대비 비중이 0.05%, 국민연금이 7~9%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크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 비중을 14.9에서 20.8%까지 올렸습시다라는 여기는 11.6에서 12.6으로 보수적으로 했던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소위원장 유상범 내가 이것은 보류하고…… 방금 내가 사무총장한테 얘기한 것은 단일종목 ETF를 하면서 사실 우리 주가의 60%를 차지하는 두 기업에 대한 ETF가 되면서 완전히 우리 주식시장이 투기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함께 문제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율을 늘려 놓은 시점부터, 리밸런싱을 하면 급등할 때 그걸 차익을 실현, 밸런싱을 해야 되니까 그걸 팔아 가지고 주가의 급등·급락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해 왔는데 사실 그 기능을 국민연금이 포기하게 만든 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율을 늘려 놓은 그 시점인데, 리밸런싱 포기였는데 이 부분도 그 시점과 다 일치한단 말이에요, 기금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잖아요. 이것 자체를 보류한다고 이미 결론을 냈는데 왜 그래요. 굳이 그렇게 변명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논의돼서…… 들어오기 전에 검토를 했고요 따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벌써 예결위 대정부질의할 때도 그 문제가 계속 나왔잖아.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감사원 자체적으로 검토한 거는 따로 지금 없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정도만 검토가 됐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국민연금에 대해서 감사 청구나 이런 게 진행된 게 없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아직 따로 진행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대통령이 문제 제기할 때는 그냥 후다닥 나오더니만 또 이럴 때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을 때는 또 가만히 있어. 그래도 감사원에서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위원장님이 어차피 보류할 것 같기는 한데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체 연금이에요, 전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다 포함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정권이 작업했다는 거를. 대통령이 떠들었잖아요. 국내주식으로,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주식으로 가라. 지금도 늦지 않았단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도 투자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연기금도 다 들어왔지요.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안 하시겠다는 거고 정부도 안 하겠다는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말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주가 띄우기 작전에 연기금이 동원됐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거지요. 저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국정농단은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 국내주식 비중은 낮게 유지하는 게 옛날부터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주식 시장을 흔들면 안 되고, 그렇지요? 위험스러우니까 그런 말은 아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반대로 잣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실제 그런 작업이 있었는지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이 손 놓고 있지 말고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 달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 그랬다. 그런 국민적 의혹과 국민적 의견을 저희들은 전달한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충분하게 이 부분은 토론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은 종료하고 이 사안은 보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종결해도 괜찮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인사혁신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전 중에는 중앙선관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 옥미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옥미선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성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총 1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고 보고 대상은 2건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쇄매수의 하한을 종전 선거인수의 60%에서 50%로 낮추어 그 결과 지방선거 당일 14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되고 91개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으며 26개 투표소에서는 선거인

대기와 투표 일시 중단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비한 구체적 비상대응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 상근 상임위원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지방선거 준비와 투표용지 인쇄기준 변경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부의 보고·인지·지시·감독 여부를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상근 상임위원은 선거 준비 및 주요 정책 변경을 상시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험 관리와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책임이 중대하므로 징계·자진사퇴 등 인사조치를 취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들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해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유형을 징계에서 시정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문구 수정도 건의드립니다.

문구 수정 요청 사항은 원안 중 셋째 줄의 ‘상근 상임위원은’부터 끝 부분인 ‘인사조치를 취할 것’까지의 문구를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험 관리와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책임이 중대하므로 위험 관리와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재발 방지할 것’으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8일 기관장인 노태악 위원장과 사무처의 수장인 허철훈 사무총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였고 사무처와 독립된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위원회와 고등징계위원회를 거쳐 선거상황실장이었던 선거정책실장 등 중앙과 시도의 책임자급 직원들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 등이 내려지는 등 인사상 책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임위원께서는 6월 8일부터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조직 안정 및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중앙선관위 내부에 3개의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법률적·실무적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현재 진행되는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선관위 특검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선거관리 제도와 선관위 개혁이라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일 것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를 감안하여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차장님, 이번 지방선거는 거의 재앙 수준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해체된다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내부 여론 조사를 하니까 ‘차라리 행안부로

다 돌려보내 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압니다.

차장님, 저를 정개특위에서도 보셨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지방선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개선하고 해결하라고 했는데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검경 합동본부라든지 그거는 그거고 지금 이걸 결산입니다. 결산에서,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 관련 예산을 썼는데 이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완전히 선거를 망쳐서 국민적인 신뢰를, 말하자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원장하고 사무총장이 물러났다고 면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또 중간에 많은 책임자들이 그것에 책임을 졌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핵심적인 책임자가 위철환 상임 선관위원입니다. 제가 행안위를 통해서, 정개특위를 통해서 살펴보니 모든 선거관리에 대한 업무 지시라든지 스크리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위철환 상임 선관위원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분은 쏙 빠지고 지금 보니까 시정요구사항의 상근 상임위원 인사 조치는 빼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십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모든 것에 책임지는 사람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게 위철환 상임위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시정요구사항대로 인사 조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말씀에 잠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준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면……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합시다.

○김성희 위원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대상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김성희 위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징계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하고 관련된 법에 대해서 더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징계를 결정한다고 해서 징계가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무슨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연히 죄를 물으면 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잠깐……

○소위원장 유상범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징계를 의결하는 것과 실제로 징계가 시행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정도 사안이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의결을 하고 공직자의 어떤 인사 조치에 관련된 게 해당 법안에 절차가 있으면 그것은 그때 따라서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욱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태약 위원장이야 비상근이잖아요, 비상근이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실질적인 업무를 통제하고 책임을 졌던 상근위원은 쏙 빼고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이지만 실무자들은 또 징계를 했잖아요, 그 밑에 일부 실장들, 선거 실장들. 했기 때문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제일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이 위철환 상임위원인 것 같습니다. 상임이잖아요, 상임. 그래서 여기를 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일단 징계를 의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박지원 위원님.

○**朴芝源 위원** 이게 지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누군가는 남아서 수습하고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과 사무총장께서 다 공적인 상황에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까지도 징계 절차를 통해서 업무에서 배제를 시켜 버리면 지금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해야 할 선관위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라도 어차피 지금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 국정조사도 진행됐고 하니까 일단은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결론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선관위가 돌아갈 수 있게는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이제 말씀 다 하셨지요?

선관위 말씀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두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징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실은 징계 의결을 해 주셔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저희 중앙선관위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이 위임전결 행사를 하는 게 4%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위원장님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총장, 상임위원을 거쳐 위원장까지 보고되고 나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상임위원 선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위철환 상임위원께서도 당초 첫 번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저희들 기관보고를 하고 나서 자진 사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께서 사퇴를 하셨을 때 남아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 여의치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관위 자체가 비상임위원 여덟 분에 상임위원이 한 분이 계셨는데 위원장이 사퇴해 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상임위원께서 사퇴해 버리게 되면 비상임위원님들만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학교 교수도 하고 계시고 변호사 업무도 하고 계셔서 대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자체가 헌법기관으로서 중요사항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배 위원님.

○배준영 위원 사무차장님 계시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배준영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예결위에서도 했지만 이번 정부에 기관장이 없는 기관들이 정말 허다합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그 조직이 돌아간다는 것은 그 조직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위철환 상임위원이 없어서 선관위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위철환 상임위원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여태까지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이럴 때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말씀드리면 지금은 위원장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상임위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배준영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했던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행안위원 하고 정개특위 위원 하면서 제가 다 보고받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다르다고 그렇게 앞뒤 바뀌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조하고 사무처 구조가 독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가 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입니다. 각종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에도 위원회가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라는 규정들이 꽤 있거든요. 이럴 때는 사무처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사무처가 실무적으로 다 정한 다음에 상임위원 다 사인받고 하는 것 제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면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다 뻔히 나와 있는 사실 갖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그러니까요 저희들 사무처에서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맞는데 보고드렸을 때 보고를 받으실 상임위원이 만약에 자리에 안 계시다고 하면 사무차장이 그걸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차장님, 충분하게 선관위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소명을 다 하셨어요. 하셨고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교섭단체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일단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사무차장님, 사무처의 역할이 너무 제한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감사원 사무총장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져요. 똑같아요. 감사원도 보통 감사 의견을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은 사무처에서 다 준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여기 있는 위원들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마치 내용을, 안에 있는 것을 가르치듯이 설명하면 위원들이 보면 우스워요. 적당히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송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자, 넘어갑시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사업, 88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위탁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5년 위탁선거경비 실제 집행액 224억 3900만 원 중 세입세출예산으로 심의된 금액은 1억 2800만 원(0.57%)에 불과하고—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최근 3년 투표가 실시된 선거 중 선관위 직원이 파견되지 않은 위탁선거가 151건, 관련 경비가 31억 8000만 원에 달하지만 각 선관위는 선거별 경비 납부·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세 번째 동그라미—선관위 자체 감사에서도 위탁선거경비의 집행 및 관리가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를 정당한 결제 절차 없이 집행하거나 지급결의를 변조·허위 작성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2021년 이후 위탁선거경비의 선거별 납부·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시정요구사항의 전체 문구 수정도 건의드립니다.

문구 수정 요청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를 국가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결산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사항의 경우 먼저 위탁선거경비를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례와 관련하여 사무처와 독립된 감사관실에서 지금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6일 중징계 1명, 경징계 5명 등 기 징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선거경비 결산내역은 2021년도 결산내역부터 국회에 이미 제출 중에 있고 2025년 8월 위탁선거법 개정에 따라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 및 결산서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통제 강화 및 위탁선거경비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선관위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위탁선거경비의 운용 및 회계처리 등을 심의토록 하고 연간 위탁선거경비 결산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추가 조치 등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내용을 보니까 선관위에서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투표 선거 위탁에도 수천만 원의 경비를 교부받은 거고요. 최근 3년간 선관위 직원이 단 한 명도 파견되지 않은 위탁선거가 151건인데 이들 선거에 교부된 경비가 31억 8000만 원에 달한다는 것, 그래서 위탁단체들은 선관위가 대체 무슨 선거 업무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왔고요.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위탁단체 선거비용, 선관위 예결산 포함이 안 되어서 불투명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현재 선관위 회계검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신다는 설명은 제가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글썄요, 지금 상황이 선관위가 충실히 자정 노력을 한다고 그래도 뭔가 검증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선거 회계에 대한 부분도 감사원에서 폭넓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게 감사원 감사 요구도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감사원 감사 요구도 같이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주성훈 아니요. 감사원 감사……

○배준영 위원 아닙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건 아니고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감사원에서도 입장 말씀해 주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감사원에서 현재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탁선거경비가 세입세출 외로 빠져 있으면서 상당한 규모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 요구를 했고 선관위에서도 자료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감사원에서 회계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김성희 위원 징계를 당연히 받아야 될 건인데 이미 징계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에 대해서……

○김성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인들 손으로 얼굴을 닦겠다고 하는데 손이 너무 더러워서 저 손으로 얼굴을 닦는 게 가능할지 모르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징계가 이미 돼서 징계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관련돼서는 징계건은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

○소위원장 유상범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선관위 직원이 단 한 명도 파견되지 않은 위탁선거가 151건입니다. 거기에 관련 경비가 31억 8000만 원. 이건 범죄예요. 이것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기관이면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선관위가 몇 년간 보여 줬던 가족 채용, 아빠 찬스부터 쭉 지나온 과정을 보면 과연 내부적인 자체 징계가 제대로 됐는지도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명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정도 되는 것을 징계 안 하면 앞으로 징계할 게 뭐 하나도 없어요. 그저 선관위에서 위탁선거경비 비용……

이것 감사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에 이 비용이 포함 안 되어 있다는 게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짬짜미로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나눠 먹어서 돈을 썼다는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이 조직 전체가 사실은 투명성이 완전히 훼손되고 부패 구조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날 정도라면 이것이 나중에 기이 징계를 받은 사람이면

징계받은 것으로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더 징계할 사람이 나오면 징계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많은 것을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국회 차원에서의 의지도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 위원** 하나만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51건 위탁선거 선거별 경비 납부 집행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결산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아까 전에 사무차장님 설명하실 때는 다 제출하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제출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혼선이 있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이게 왜냐하면 위탁선거관리경비에 대해 실제 집행하는 거나 관련은 구시군 선관위가 담당하게 됩니다. 모든 자료들이 지금 구시군에 있는데 당초에 이것을 박정하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수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23일 날 요청이 왔었고 9월 1일까지 제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1일 날 예결위 비경제부처 전체회의 때 그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그쪽 비서진하고 약속된 시간에 약속한 날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투표선거 같은 경우에도 위탁선거관리경비는 사전에 미리 받습니다.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에 미리 받기 때문에 무투표가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위탁선거법 78조에 따라서 선거관리경비를 관할 선관위 예금 계좌를 통해서 접수를 받거든요. 산출하는 내역을 통지하고 금액이 입금이 되면 그것을 받고 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무투표가 되는 것은 선거기간, 후보자 등록기간이 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하다 남은 것은 다 반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탁선거관리경비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78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출을 하고 집행하고 선거일 후 30일 이내 정산결과를 제출하고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징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종욱 위원** 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이 부분이 지금 위탁선거법이 생긴 게 2014년인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위탁선거경비는 사실 선관위의 수입이라기보다는 위탁단체를 대신해서 집행하는 실비 성격의 돈입니다. 위탁단체의 민간재원이고 그리고 순수하게 행정기관의 수입이 되는 여권발급 수수료라든지 인지대 등 용역을 제공해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한 경비인 수입대체경비와는 성질이 좀 다르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선거 실시 여부 자체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출해요? 수입대체경비 지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아닙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출합니까, 예산서에 없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78조에 따라서 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하고, 그 산출 기준은 저희 위탁선거경비의 산출 기준 규칙에 따라 산출합니다. 산출하면 산출 내역을 해당 위탁단체에다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하면 그 통보를 받은 위탁단체에서는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지요.

○이종욱 위원 무슨 근거로 집행하냐고요. 돈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집행을 어떻게, 지출을 어떻게 하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출에 대해서는 위탁선거관리경비 산출 기준에 그 세부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없는 내용도 해당 선거관리에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잘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수입대체경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수입대체경비인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출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서가 있어야지 지출을 하는데 예산서도 없는데 지출을 한다고요, 돈 들어왔으니까? 돈 들어오면 다른 창구에 들어오는 거고 내 손이 아니고 딴 데 들어오는 거지요. 내가 돈을 쓰려고 그러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물어본 건데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어쨌든 결산서는 다 기입해서 한다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도 제출하고 있고 해당 단체에도 지출한 내역들은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건 아까 앞으로 제도개선해서 예산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예산에 넣는 방안, 제도개선 의견은요 결산 내역을 저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해당 단체에만 주지도 않고요.

○이종욱 위원 그걸 예산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들쭉날쭉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불륨은 일정하지요,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규모 자체도 연도별로 해마다 다릅니다.

○이종욱 위원 다르지만 미니멈 이상은 있잖아요, 최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금액 산출기준이, 최근 5년 치를 보게 되면 가장 적었던 해가 10억밖에 안 됐고요, 가장 많았던 때는 388억까지 올라갑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지만 대체로 알잖아요. 그다음 해에 조합장선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대충 알지 않습니까? 추정은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그 위탁선거 경비를 세입세출예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자는 주장이 최근 몇 년간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행안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한 차례 그 논의가 중단됐고 다시 행안위 소위에 관련 법률이 지금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 행안위 결산소위 할 때도 세입세출예산 운용의 타

당성 같은 걸 인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사정을 이해한 거고 실제 제도를 세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느 길이든, 이쪽 길이든 저쪽 길이든 정해야 되는데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그 이견에 대해서, 부처도 이견이 있고 위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재검토하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이걸로 끝내려고 그랬더니 딱 2개 기관이 보니까, 진화위랑 10·29이태원 여기에 보니까 아예 심사 대상이 없네요. 그래도 이것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지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김귀옥** 진화위 상임위원 김귀옥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이호중** 상임위원 이호중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장영수** 진화위 상임위원 장영수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기획운영관 김준희** 기획운영관 김준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잠시 앉아 계시지요. 빨리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진화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 총 4건이 제기되었으나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수행해 보고대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형식적이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거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기획지원과장 김경환 기획지원과장 김경환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기된 시정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경찰청이 아마 1건이 있다 그러면서 좀 빨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 김종철 경찰청차장 김종철입니다.

○경찰청자치경찰기획단장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 이영철입니다.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입니다.

○경찰청재정담당관 이광진 경찰청 재정담당관 이광진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성훈 경찰청에 대해서는 총 14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대상은 1건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에 바디캠 8766대 구매를 위한 7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확정 후 2025년 2월 통신형 바디캠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예산비목을 전용하여 집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정부담이 5년간 194억 8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경찰청은 임의로 바디캠 물량을 확대하고 단년도 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야기시킨 관련자를 징계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김종철 상임위의 의결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초 비통신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이게 처음에 구매한다고 했는데 임차로 변경하고 물량 확대하고 이것 관련된 비용이 추가 국고 부담이 발생해서 194억까지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단년도 구매 사업을 다년도 임차통신사업으로 아예 통째로 바꿔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국민 부담도 발생시키고.

그래서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도 굉장히 왜곡된 데다가 국민적인 재정부담도 더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상응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일단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단년도 사업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경찰청차장 김종철 2개년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총사업비를 처음에 얼마로 계상하셨다가 194억으로 변경된 거지요?

○경찰청차장 김종철 당초 154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한 40억 정도 늘어난 거네요?

○경찰청차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비통신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드 꽂는 블랙박스형으로 했다가……

○경찰청차장 김종철 외장형 하드로 준비를 했다가 자료 유출이라든지 보안상 문제점을 인식해서 라우터 방식의 통신형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희 위원 통신형이라고 하면 개인 기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어딘가 서버로 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자기가 찍고 자기가 빼서 훼손하거나 아니면 찍은 내용을 복사하거나 이러는 게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통신형으로 바꾸신 건가요?

○경찰청차장 김종철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비통신형으로 하셨던 거지요?

○**경찰청차장 김종철** 애초에 충분하게 검토를 못 하고 추진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 위원** 어쨌거나 지금 2개년 사업이었고 그걸 5년으로 늘린 거고 그다음에 예산 40억 정도 늘어난 거고 비통신형의 문제점이 발견돼서 통신형으로 바꿨다 이렇게 제가 취지를 이해하면 되겠나요?

○**경찰청차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애초 충분한 고민 없이 추진을 했지만 이게 중과실이 나 고의가 아니고 당초 비통신형 문제점을 인식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예, 그래서 제도개선이 취지에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 하나 여쭙볼게요. 자료 보니까 통신형과 비통신형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현장 출동한 상황에서 지금 범죄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게 아니고 바디캠을 경찰서나 이런 데 들어왔을 때, 그렇지요? 다시 복귀했을 때 거기에 저장기 자동으로 된다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입니다.

그런 게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말로 그렇게 헛갈리게 하면 안 되지요. 실시간 통신형이 아니고 복귀했을 때 서버 저장을 수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자동으로 할 거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통신형, 비통신형 그러니까 뭐 대단한 실시간 영상을 국민들한테 보여 주는 줄 알았잖아요. 그 차이점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지금 이게 라우터라고 하셨는데 5G로 싱크되는 경우도 있고 소위 말하는 와이파이로 싱크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다른 거 아닌가요?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급된 바디캠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복귀하고 나서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국정자원관리원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유지 보수나 아니면 라우터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경찰청에서 승인했을 때는 현장에서 바로 국정자원관리원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도 겸용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배준영 위원** 아니, 그래서 경찰청에서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5G니 뭐니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당연히 그게 현장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되는 줄 알지요.

그런데 결국은 휴대폰을 유선으로 충전하느냐 무선으로 충전하느냐 이런 정도고 어쨌든 현장에서 직접 송출하는 것은 아닌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정도를 예측 못 하고 처음에 그렇게 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 좀 더 진일보한 것은 당해연도 계획을 세워 갖고 현장에서 직접 송출되는 것으로 바꾸는 계획을 몇 년 계획으로 세워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요?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현장에서 바로 5G를 이용해 가지고 국정자원관리원으로 가게 되면 금액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346억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선라우터 방식으로 하게 되면 194억으로 줄일 수 있어서 대안으로 5G 대신 라우터 방식으로 사용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5G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지금 경찰관분들이 굉장히 사건도 많고 격무에 시달리시고 현장에서 뛰시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처음에는 운영하다가 근원적인 방법을 바꿨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저는 이것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이게 사업자에 의해서 지금 경찰청이, 사업자들의 로비와 활동에 따라서 경찰청이 채택하는 것이 바뀌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약간의 불편함 차이지요. 직접 하느냐 무선으로 하느냐 차이잖아요. 그것을 마치 무슨 비통신형과 통신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성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김성희 위원** 저장공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잘 해 주시지요.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통신형의 문제점이 발견된 내용으로는 가장 크게는 보안성 문제입니다. 현장경찰관들이 바디캠을 찍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현장경찰관들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불리한 영상을 저장을 안 시킨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현장경찰관이 영상을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보안성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경찰관서에 저장장치를 배포했는데 그 저장장치가 용량은 컸지만 보안성으로 된 부분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은 8TB 중에서 100GB밖에 사용할 수 없는 저장공간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전송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비통신형인 경우에는 오래 걸렸고 그다음에 이게 내구성도 취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통신형이 장점이 많았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러니까 더 황당하잖아. 지금 방금 보고한 대로 하면 이것을 채택한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네. 완전히 엉망진창인 시스템을 그냥 뭔가에 의해서 채택을 해 놓고 해 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엉망진창…… 보안도 안 돼, 저장공간도 안 돼.

아니, 8TB에 100MB?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장비를 들어오게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뭐…… 지금 방금 보고한 대로 하면 77억짜리 예산을 들여서 깡통을 가지고 들어온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충실한 보고를, 들여다보니까 더 황당하네.

아니, 이것을 채택하게 한 사람이 내가 봐서는 시행하는 사업자와 아주 긴밀한 관련성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깡통을 채택할 수가 있냐고.

이것 하기 전에 사전테스트 다 하잖아요. 그것도 안 했어요?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이종욱 위원** 이것 R&D도 아니잖아.

○**소위원장 유상범**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배준영 위원** 아니, 설명 듣다 보니까 이거 바꾼 사람만 징계하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채택한 사람도 징계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이게 지금 황당하잖아요. 방금 설명한 내용대로 하면 완전히 깡통을 가지고 들어오는 데 돈을 77억을 쓴 거예요.

아까 8GB 저장공간 있는데 얼마 쓴다고 그랬어요, 저장공간을?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8TB 기준 100GB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8TB인데 100GB를 쓴다고 그랬어요?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예, 그 정도의 보안……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러면 그 저장장치를 구입한 선수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것은 위원님들과 한번, 의견이 지금 다르니까 보류를 하겠지만 적어도 77억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저장장치부터 모든 게 완전히 엉망진창 깡통을 가지고 들어와서 돈을 쓰고 ‘어? 이것 아니네’ 그러니까 또 다른 걸 쓰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한번, 의견이 좀 다르시니까 지금 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저기, 누구시지요, 아까 보고하셨던?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치안상황관리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 상황, 최초에 채택했을 때 발견된 문제점 정리된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한 얘기를 아마 공감할 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왔느냐고 문제점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지적된 문제점을, 우리가 보류할 테니까 금주 내에 점검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보고를 좀 위원님들께 해 주세요.

○김성희 위원 이게 윤희근 청장 때예요, 조지호 청장 때예요?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2024년 11월……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 청장이 보고도 안 받아. 실무자 과장급이……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이게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미리 알고도 한 거라기보다는……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보세요.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예.

○소위원장 유상범 기기를 채택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잖아. 테스트하잖아. 테스트 안 하고 예산을 받아요? 경찰청이 그렇게 일해요?

이게 바디캠이 뭐냐 하면 워낙 여러 가지 경찰관의 가혹행위 주장도 많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해자의 범행도 정확히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택하자고 중요하다고 해서 경찰청이 막 언론플레이까지 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받았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것 받아 놓고 전송하는 것부터 모든 게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저장장치까지, 이게 8TB인데 100GB? 그러면 깡통이지. 완전히 그것은 어디 중고 중에 다 쓰고 나서, 저장공간 다 쓰고 일부 남긴 것을 쓰는 거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봐서는 이 전환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것을 채택한 사람에 대한 전체 결재 과정을 한 번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주 중에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 징계 얘기했던 위원님들께 방금 말씀하신 채택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답변 주세요.

○경찰청차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찰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과 본회의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본회의 종료하고 저희들 아마 전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것 끝내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현재 특정할 수 없어서 행정실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제2차관 김대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기획조정실장 김정훈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또 다른 분 계신가요?

기왕 오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 이용신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기왕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일어나서 인사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는 총 8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5건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5년 추경으로 편성된 공연예술관람료 지원 사업과 미술전시관람료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70.7%, 13.5%로 부진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미술전시관람료 지원 사업은 목표 인원 160만 명이 직전 연도 유료관람객 수 대비 23.6%에 달하는 등 수요 예측의 합리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않고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여 집행 부진을 초래한 관련자를 징계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 수요, 과거 집행실적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반복적으로 과다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여기에도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징계, 주의, 제도개선 중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세 개를 통합해서 본다는 얘기인가? 세 가지를 하나로 정리해서 그냥 제도개선으로 가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부 다 각각의 지적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각각의 지적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 왜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판단하실 건데, 처음 거는 제도개선은 됐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답을 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올해 우선 추경사업부터는 미술전시가 워낙 이용률이 낮아서 미술전시는 뺐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했고, 작년에 전시 관람률이 13.5%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예 전시 할인권을 뺐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과거 추경에서도 같이 집행 부진으로 국회의 시정요구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코로나 기간 때.

○배준영 위원 그런데 2025년 2차 추경에도 동일 방식의 사업을 다시 편성해 집행 부진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사실 실제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 계획을 확인해서 단계적으로 교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시 전액 교부하시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됐는데, 과거에도 결산 시정요구에 대해서 관련 법규 준수를 약속하시고 조치 완료를 보고하시고 그런데 동일 문제를 또 반복하고. 그래서 원문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엄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징계 처분을 저는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사안은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위의 것과 아래 것은 사실상 내용이 같은데 상임위는 제도개선이고 한 분은 주의인 것으로 정리가 되고 또 하나는 징계까지 나간 부분이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朴芝源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동그라미랑 세 번째 동그라미는 사실

상 유사한 내용이어서 지금 현재 부처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제도개선 방법도 밝히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가 징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징계라는 게 사실 고의나 담당자의 중과실 정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징계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결론은 표를 많이 못 팔았다 이거 아닙니까? 7월 달에 추경을 세워 주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생각만큼 할인을 못 시켜 줬다, 티켓을 많이 못 팔았다 이런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담당자를 징계를 해 버리면…… 사업 자체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특히나 요즘 같이 민생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마 담당자가 조금 의욕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정도로 보여서 징계까지 가기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징계 부분은 저희는 부처 요구와 마찬가지로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징계를 요구했는지 부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처에서 2020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해 가지고 동일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지적을 받았고 이분들은 시정요구를 했고 시정 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즉 다시는 이것이 재발하지 않게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25년에 동일한 사안이 또 재발이 됐습니다. 즉 문제가 있고 이렇게 보조금을 사업 단계에서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것 다 지적받았는데 시정 완료해 놓고 완전히 동일한 사안이 다시 재발을 했어요.

이것은 국회가 시정요구했다는 그 요구에 대한 답도 사실상 거짓말로 한 것으로밖에 안 되고, 국회의 어떤 예산 감시 기능에 대해서 그냥 그 순간 면피만 하고 끝나 버리는 그 반복적인 행위인데…… 잘 아시잖아요, 시정요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지적을 한 건데 그 지적을 한 게 5년 만에 또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

이거 그러면 뭘로 하실 거예요? 제도개선하실 거예요, 반복되는 잘못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잠깐 답변을 좀……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부처의 행태에 대해서 의회가 온정주의로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한다 그래서 당사자가…… 부처에서 아마 징계하면 경고쯤이나 견책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본인은 위에서 시킨 대로 하니까. 실무자가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관님, ‘이렇게 보조금 일괄 집행하고 선집행하는 부분의 문제점이 과거에 지적이 됐고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하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이 문제를 지적하고 다 같이 합의해서 약속을 한 것을 행정부처에서는 5년 만에 사람도 바뀌고…… 차관님도 바뀌었지요,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이것을 용납하시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건 국회의 권위와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양당의 의견이 상당히 지금 대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차관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20년에서 21년 결산 시 시정요구를 받았는데요. 그때는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조했는데 그 이후에 21년에서 23년까지 시각예술·전시 규모가 좀 늘었습니다, 23% 정도.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은 이제 좀 상황이 변했으니까 다시 전시 할인권을 발행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일반예산으로 들어갔으면 괜찮아요. 추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추경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예산들은 단년도에 다 쓸 수 있는 예산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과거의 잘못을 반복했다고 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실 것 있습니까?

○배준영 위원 제가 좀……

차관님 말씀하신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게 미술전시 관람료 지원에 실행된 게 3.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써도 이렇게 부실한 집행을 한 거에 대해서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데 믿어 달라, 믿어 달라 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개선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삼점 몇 프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게 정산 시점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잠깐……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 관람료의 최종 집행률은 13.5%였고 사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 편성할 때는 미술 관람료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지 않고 공연예술 관람료도 전년 집행률을 고려해서 감액을, 줄여서 41억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45%가 집행됐고 금년 안에 100% 다 집행될 걸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추경으로 갈 사안도 아니잖아요, 원래가.

하여튼 좋습니다만, 박지원 위원님은 이미 입장을 밝혔으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정도에서……

정태호 간사님.

○정태호 위원 보류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유상범 정리해야지요. 보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자고 하는 거지요?

○정태호 위원 예.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 얘기하실 거면 하시고요.

○정태호 위원 아니, 하나 물어보고 싶어 가지고.

○소위원장 유상범 물어보세요.

○**정태호 위원** 지금 공연예술·미술전시 관람 추세가 어때요? 예를 들면 지금 영화, 소위 말하는 영상콘텐츠산업 부분이 엄청 침체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쪽 분야는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영화 분야는 침체돼 가고 있다가 ‘왕사남’을 계기로 해서 조금 올해 반등하는 분위기고요.

○**정태호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연예술하고 전시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게 확 줄어들었다가 그 이후에 조금씩 회복되는 국면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 국면에서 뭔가 이걸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던 건데 7월 달에 하다 보니까 집행 자체가 늦어졌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는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7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걸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징계나 시정, 주의를 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불법이나 부당한 어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꼭 필요한 정책이었는데 뭔가 준비에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징계 또는 시정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라서 보류를 하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예, 알겠습니다.

의견 다 말씀하셨지요?

○**이종욱 위원** 저 한번……

○**소위원장 유상범** 예.

○**이종욱 위원** 저는 별개로 아까 답변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예 빼 버렸다고요? 이제 안 한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할인권 사업은 올해 추경에서는 전시를 뺐습니다.

○**이종욱 위원** 올해 추경에서는 빼 버렸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오히려 지금 그림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은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셔야지, 국회에서 야단맞기 싫다고 아예 빼 버리면 그 소중한 분들, 십삼점 이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공무원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빼 버리고, 혼나면 안 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보다 이게 13.5%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 줘요, 이제? 그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냥 다 없애는 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성희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할인쿠폰이 처음에는 3.7%고 좀 낮아도 했는데 이제 완전히 없애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미술관을 가는데 한 1만 원짜리 티켓

이면 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대 주면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인데 한 2000원 정도 대 주면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좀 시물레이션 해 보고, 그걸 했으면 제가 볼 때는 3.7%가 아니라 100% 나왔을 것 같거든요, 같은 예산을 활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 줬습니까? 쿠폰을 통해서 할인되는 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제 기억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술전시 쿠폰사업이 저조했던 이유를 분석했을 때 저희가 3000원 이하하고 무료 쿠폰 비율이 전체 미술전시 관람의 6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쿠폰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금년부터는 지역 전시, 직접 지역에서 전시하는 작은 전시회 같은 전시지원 사업 쪽으로 정책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매번 지적되니까 그것은……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2차관님 말씀하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워낙 디베이트가 많아서,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 5년 전의 일이고 또 그 사이에서 사람도 많이 바뀌고 해 가지고 국회의 팔로업에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지적도 참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문화 쪽은 이쪽을 좀 업해야 되는 그것도 있고 사실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지고 해야 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문체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조금 너그럽게 봐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또 재경부차관님께서 문체부차관님의 애로점을 잘 설명한 걸로 일단 받아들이고요.

결정은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국제 컨퍼런스 연계 글로벌콘서트 개최 지원 사업은 구체적 사유 없이 정부광고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쟁입찰을 회피하고 해당 정부광고를 수행한 특정 방송사 선정 경위 및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지급한 민간경상보조금 20억 원을 변상하도록 조치할 것, 여기에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변상, 시정 중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서 시정으로 조정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금 20억 원 변상하도록 조치할 것에 대해서는 이게 콘서트가 정
상적으로 개최된 점을 고려해서 앞엿것에 시정으로 합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변상 요구를 시정으로 변경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배준영 위원 은평구가 합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광고 방식으로 우회를 했고,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 가운데 MBC를 단독으로 선정을 한 사유도 불분명하고 사업 성과도 저조
하다라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은평구에 지급한 민간경상보조금 20억
원을 환수 조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MBC와 같은 특정 언론사를 선정한 기준이나 이
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게 처음에는 유엔사회개발연구소하고 은평구·한양
대·MBC 공동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 장소가 섭외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을 방송으로 돌렸습니다. 방송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MBC에서 방송을 하도록 광고
로 들어간 거고요.

저희는 콘진원에다가 교부를 했고 콘진원에서 은평구로 교부해 가지고 은평구에서
MBC로 광고를 준 건데 이 과정을 저희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살펴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게 처음
에 행사를 기획했던 의도대로는 안 됐지만 콘서트는 제대로 됐고 방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께서 변상하라고 나온 ‘민간경상보조금 20억 원을 변상하도록 조
치할 것’ 이 부분만, 20억 원이라는 걸 이렇게 특정해서 하시기보다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으로 해 가지고 이걸 시정으로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또 질문하겠는데 콘텐츠진흥원에서 MBC로 정한 겁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콘텐츠진흥원에서 은평구로 교부를 했고 은평구에서
MBC로 정한 겁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수많은 언론사 중에 왜 MBC로 했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시고
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잠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장 김유미 대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은평구의 입장은 당시 이 사업이 국제 콘퍼런스를 연계한 콘서트 개최 지원이었는데
요. 국제 콘퍼런스의 주관사 중에 MBC가 있는 상황이라 메인 행사가 되는 포럼과 콘서
트가 개최되어야 되는 기획 의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방금 차관께서 애
기하신 것처럼 장소 섭외가 불발돼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MBC와 사전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이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방송
사를 선정하고 그랬다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제대로 했

는지 그것을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내용을 잘 모르고 오셨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희가 알고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욱 위원 비슷한 거니까 저도 같이 할게요.

결국은 이게 문체부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잖아요. 국가 돈은 문체부에서 간 거지요. 은평구의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을 관리하고 중간에 계약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문체부가 책임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이종욱 위원 거기에서 은평구가 요구했다고 해서, 갑자기 정부광고로 바꿔 달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해 줬다는 답변은 안 되는 것 같고 별도 차원에서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 잘 진행이 됐다, 방송도 나왔다 이러는데 방송 나가는 게 이 사업 목적은 아니잖아요. 방송 나가는 건 MBC 목적이지만 우리 정부 돈 쓰는 것의 목적은 아니지요. 그런 말씀 드리고.

결국 앞뒤를 다 자르고 보면 남는 것은 MBC한테 수의계약 20억 준 것으로 결론은 그렇게 되거든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어떠한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선정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갑자기 20억짜리 물량이 수의계약으로 MBC로 가게 됐잖아요, 다른 거 다 빼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실제 MBC 선정 사유하고, 20억 원을 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상세 내용이나 견적서라든지 실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MBC가 말만 하면 10억이 됐다가 20억이 됐다가 15억이 됐다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부 예산이. 문체부가 봐야지요.

문체부가 국회에서 돈 20억 넣으면 그냥 딜리버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하라고 정부 기관이 있는 거지요. 내역을 보고 절차를 따르는지 법령에 맞는지, 내용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지, 그거 검토하라고 문체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남의 집 불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공직자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세한 20억 원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까 실무자분 말씀 중에 장소를 급하게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MBC와 접촉을 했더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장 김유미 예, 은평구에서는 당초 복수의 장소에서 동시에 행사를 개최해서 1만 명 이상을 모객할 예정이었는데……

○배준영 위원 그게 어디 어디였어요?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장 김유미 광화문 광장, 경복궁의 흥례문 광장 그리고 세 번째 장소는 변경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은평구 내의 북한산성 주차장, 혹은 다른 장

소까지 해서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경복궁 내 홍례문 광장에서만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모객 규모가 1만 명이었는데 홍례문 광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2250명가량 현장 인원이 됨에 따라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방송 송출을 추가해서 노출을 확대하려고 했다는 입장입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장소를 확보할 수 없는데 MBC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했다는 취지로 알아 들었는데 결국은 경복궁 홍례문에서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장 김유미 예.

○배준영 위원 홍례문에서 하는 거는 꼭 MBC뿐만 아니라 주최 측 누구라도 섭외해서 할 수 있었던 거고 달라졌다면 말씀대로 방송했기 때문에 좁은 장소에서 했더라도 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그거밖에 달라진 게 없는데 그게 왜 꼭 MBC로 해야 되느냐, KBS·SBS 여러 방송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던 거는 MBC가 처음부터 공동주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임박해 가지고 그때는 잘 알고 있는 MBC와 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행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급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는 왜 꼭 MBC라고 해야 되냐면 장소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장소 섭외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꼭 MBC여야만 됐다는 거랑은 안 맞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MBC여야 되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못 해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朴芝源 위원 문체부에서 계속 은평구 입장만 전달하고 실제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니깐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계속 뱅뱅 도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정 조치 내용 중에 문체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변상까지 갈 정도로 현재 근거가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제로 지방계약법상 계약 취소 사유라든지 무효 사유라든지 이런 게 밝혀진다고거나 보조금법상 교부 결정을 취소할 만한 부정한 방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가 있었다거나 이런 사유가 확인되면 그때 가서 환수하거나 변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현재 단계에서는 시정 조치에 따라서 문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까지만 국회에서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수상해 보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조금 더 확인해서 국회에 알리는 절차는 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저도 비슷한 말씀인데, 공동주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부광고는 돈 주고 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격이. 공동주관은 자기가 어느 정도 책임지는 거예요, MBC가. MBC가 공동주관이었잖아요. 그러면 MBC도 뭔가 해야지요. 이게 행사가 좋으면 MBC가 공짜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행사가 좋다면.

그런데 공동주관이라는 타이틀을 내걸면서 돈은 다 받아 가고 방송은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공동주관이다

이런 말 하지 말든지요. 공동주관이라는 것하고 정부광고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개념이잖아요. 공동주관이라는 타이틀만 걸고 책임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20억 내역을 보자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동주관 이름을 걸고 뭘 분담을 했는지, 그 비용 중에 몇 프로를 정부가 대고 자기들이 뭘 했는지, 실비용 중에 MBC가 자부담한 부분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다 받아 간 것 같아요. 오히려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밝히려는 겁니다. 정확한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지금 현재 20억 환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님도 구체적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지적하신 부분 일리가 있고요. 또 이종욱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 사안에 공동주관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형식은 공동주관인데 실제로 MBC한테 돈을 다 전달해 버리고 가는 그런 형태로 잘못 운영된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니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한경쟁입찰이잖아요. 그러면 사유가 명확하게, 이걸 안 하고 취소하면서 그다음에 단순히 수의계약하는 과정의 프로세스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 게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예 없이 지금 일방적 수의계약이 됐다는 것이 지적인데 그 부분은 지금 문체부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행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가장 핵심인데, 그렇지요?

우리가 보류를 할 테니까 이것은 이종욱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도 한번 보고를 받으셔야겠지요? 언제까지 보고를 받으시겠나요? 이번 주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우리가 보류한 걸 재검토하려면 이번 주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일요일까지 해서 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리고 그걸 저희가 전달받아서 나중에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보고해 주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의 경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청산된 17개 자펀드 중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펀드는 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는 원금 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익률이 저조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펀드별 수익률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출자 분야·규모와 운용전략, 운용사 선정 기준 등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수익성과 정책 목적을 균형 있게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주의, 제도개선 중에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다 청산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이것 지금 청산한 펀드들을 대상으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손실률이 마이너스 50%, 60%, 70%, 90%, 50%, 40%.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는 하나도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게 고위험·고수익 펀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이게 총액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훨씬 많지만 하나가 크게 터진 게 있어서……

○이종욱 위원 대박 터졌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총액으로 보면 2000억 원 정부 출자금을 넣어서 회수는 3677억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1665억 났습니다.

○이종욱 위원 큰 게 뭐 하나 대박이 터졌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게임 쪽에 하나가……

○이종욱 위원 게임 쪽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이종욱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지금 다른 카테고리 중에 제가 보니까 한 15개 중에 13~14개는 전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70%, 아무리 여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문화 분야가 너무 관리가 안 된 느낌인데요. 이것 단순히 제도개선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 분야가 워낙 모태펀드라는 속성 자체가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하고 영화나 게임이나 방송 드라마나 열악한 곳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지원하는 곳들에서 수익을 고루 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고수익 분야라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수익이 나왔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그 한 군데에서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허성무 위원 이게 원래 이 분야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대부분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통해서 문화예술 쪽에 어쨌든 투자가 일어나고 진흥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저는 거꾸로 투자 방향을 조정할 문제가 아니라 어렵고 말도 안 되고 하는 중소기업들과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망하고 그렇게 몇 년씩 망해도 한 번씩 터져 가지고 메꾸고 하는 거지 이것을 안 그럴 것 같으면 민간 시키면 되지요. 민간이 안 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돈을 넣고, 종잣돈을 조금씩 넣어서 어쨌든 그런 생태계를 살려 보려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방향을 왜 트세요? 어디로 트시겠다는 거예요? 더 안전

한 삼성이 시나리오 쓴 그런 게임에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방향 선회 안 하고요, 위원님. 모태펀드는 계속 모태펀드로 가고 그 바깥에 글로벌 리그 펀드나 성장펀드 같은 다른 것을 좀 더 해 보겠다는 뜻이었습시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국회가 징계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데는 5년, 10년에 한 번씩 크게 터지면 그것을 칭찬해 줄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아니, 애초에 이것은 이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허성무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이 모태펀드 운용은 자산운용사에서 총괄해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한국벤처투자에서 하고요 거기서 자펀드를 조성합니다. 자펀드에서 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펀드라는 게 김성희 위원님이나 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하는 것 전부 다 족족 수익 난다면 그것은 투자의 신이지요.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고 결국은 제대로 수익 낼 수 있는 데가 말씀하신 대로 게임산업 외에는 펀드로 투자해서 수익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그래서 감사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차피 펀드에서 자펀드 만들어서 수익이 났었고 손실밖에 날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것을 펀드로 해 가지고 사실은 그 사업에 있는 애들이 보조금을 받으면 다 감독받고 해야 되는 그런 구조지만 펀드로 받으면 그런 관리 감독상의 부담은 다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당수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선정 과정에서의 적절성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김성희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선정해야 되는데 ‘이것 무조건 손실 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돈을 집어넣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냥 나눠 주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혹시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먼저 궁금하네요. 펀드 출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많고 좀 지나면 온갖 소리가 다 나올 거예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이런 문제들은 계속 제기는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적으로 접근하는 데 좀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관심을 갖거나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고.

말씀하세요.

○정태호 위원 모태펀드의 성격 자체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또 운용사가 있는 거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영화계정 쪽을 이렇게 청산을 했는데.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화산업이,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는 첫 번째 통로가 영상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영화·드라마.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넷플릭스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영상콘텐츠산업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침체되고 있거든요. 영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화 제작, 개봉 편수가 거의 30%가 줄었어요, 지금 이게 막 퍼져 나가야 될 때인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태펀드의 영화·문화 계정을 청산을 한다, 이것은 대단히 안 좋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제도개선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 단계, 그래 가지고 영화나 영상 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상당수가, 현장에서 뛰는 스태프들이 배달하고 있어요. 배달라이더 하고 있어, 먹고살아야 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 사람들이 현장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영상콘텐츠산업들이 계속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한 10년 가 버리면 대한민국 영화나 영상콘텐츠산업은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오히려 이것 더 투자를 해도, 모태펀드는 그야말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서 정부가 돈을 빼 버리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안 뺐습니다. 이것……

○정태호 위원 여기에 청산했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니요, 자펀드를 청산한 거고요.

○소위원장 유상범 모태펀드 그대로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영화계정, 문화계정은 계속 하고 오히려 늘릴 겁니다, 모태펀드 이쪽에.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펀드, 그러면 계속 만든다라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청산된 자펀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태호 위원 좋아요. 하여튼 모태펀드의 역할이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어차피 여기는 어느 정도 투자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본은 돼야 되니까…… 이것 보조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보조사업은 아니고 청산하고 남는 돈 가지고 자펀드 하나 또 만들어서 또 투자하고 그런 거잖아요.

계속 이 돈을 돌려야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 지금 나온 사례처럼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70억 투자했는데 5억 남고 65억 이런 것은 안 좋은 사례잖아요. 최소한의 어느 정도 수익률은 그래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그런, 이렇게 미션을 줘야 그나마 선별할 때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만 먹고 그냥 손해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펀드는.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아주 극단적인 사례는 안 나오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최소한 수익률이 한 50%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 자펀드 할 때 민간에서도 펀드에 참여한 것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민간에서 참여하도록 합니다. 한 40% 정도 참여

하도록 하고요.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손실이 난 게 꽤 많은데 이 부분에도 민간에서 좀 참여한 게 있어요?

○정태호 위원 원래 모태펀드가 5 대 5로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5 대 5 내지는 6 대 4인데요. 그런데 지금 융합콘텐츠 기획·개발은 융합콘텐츠라는 게 워낙 어렵고 이것을 또 중소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손실이 났던 건데 앞으로는 너무 큰 손실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여러 가지로 이와 관련해서는 주의나 제도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고.

다만 정태호 간사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보면 옛날에 대기업이 영화산업에 2000년 초반에 대규모 진출을 했다가 다 썰물처럼 빠져나왔잖아요. 대한민국에 세 판이 돈이 들어가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건설·공사판 또 영화판 또 도박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단순히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서 마치고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의 자펀드가 계속 만들어진다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조자금 공급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많이 큼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자펀드를 하실 때 좀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결국은 이 돈이 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개인, 기업이 얻은 이익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 그런 위험 감수해’.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90% 이상 손실이 반복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또 넣는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고민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유상범 이 사안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 신기술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인공지능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임을 인지하고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됨에 따라 실집행률이 58.6%고, 특히 제2회 추경에 따라 증액된 210억 원에 대한 실집행률은 9%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한 관련자를 징계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음

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 실적과 향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교부 이후에도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1번이랑 3번은 사실상 내용이 같은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성훈 주의가 들어갔고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강대식 위원님 같은 주의가……

알겠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첫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주의 중에서 상임위 의견 존중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도 26년 8월 현재는 97% 이상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역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추경에는 실집행률이 58.6%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는 210억에 대해서 실집행률은 9%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게 계산의 차이인데요, 위원님. 그러니까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을 놓고 집행할 금액을 다 모은 다음에 본예산 다 딱 채우고 1차 추경 딱 채우고 나니까 집행한 돈이 2차 추경이 210억 중에서 9%다 해서 국힘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건데 저희들 계산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 김경화 문체부 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 김경화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실집행률이 19.4%이고요, 사업 마감이 되는 올해 6월 달까지는 97.7%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글썽,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사실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급성 때문에 추경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든지 19%든지 기존 추경예산을 많이 쓰지 못했던 것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과다한 예산을 잡아서 집행률 또한 낮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AI 기술이라는 게 계속 너무 급격하게 발전, 변화를 하고 있어서 현재 그 시점에서 제일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정해서 210억 정도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이 같이 연합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시도한 겁니다. 시도를 해서 실제로 플랫폼 같은 게 형성되고 지금 굉장히 업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산도 거의 다 소진을 한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인공지능콘텐츠 제작지원은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 김경화 저희가 인공지능콘텐츠 제작지원은 여러 번의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K-콘텐츠 AI 선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의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210억 원이었고요, 그때 저희가 3개 과제에 대해서 전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결과 CJ 4D플렉스하고 중소기업이 되는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NC AI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핑크퐁’이라고 아기상어를 만드는 핑크퐁컴퍼니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AI 콘텐츠 제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게 사업화가 어떻게 되느냐, 유통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콘텐츠들은 유통이라든지 사업화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상생하는 프로젝트로 했었고요.

첫 번째 만들어진 CJ 4D플렉스에서 중소기업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AI의 경우에는 기존과 다르게 제작하는 파이프라인이 달라집니다.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모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3개의 영화와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연내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진 대기업이라고 그러면 예측을 하고 예산이라든지 사업집행을 예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을 적게 사용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것은 글썄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차관님께 물어볼게요.

‘신기술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해 가지고 추경 때 210억 원을 증액했는데 올해 본예산은 얼마를 산정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올해 본예산은 238억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2026년 본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26년.

○소위원장 유상범 예, 그러니까 26년 본예산 238억. 그러면 지금 238억 원의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것 지금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 김경화 올해 예산 집행률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97% 정도의 집행률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잖아요. 예산의 집행 순서가 본예산, 추경,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했으니까, 우리 쪽은 파악해 보니까 9%로 나왔고 문체부에서 19%로 나왔어요. 결국은 추경 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건 명확한 것 같아요. 올해는 추경에서 이월된 예산이 사실상 200억 정도가 있으니 그건 이미 다 썼을 거고, 그러면 본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한 거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본예산……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지금 쓰는 순서가 추경에서 이월된 것부터 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본예산을 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소위원장 유상범 확인 좀 해 보시면……

그러면 결국 본예산은 많이 남아 있고 이월된 추경을 썼다면 그것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작년에 2차 추가경정 할 때 사업기간을 6월까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올해 예산 238억은 제 짐작으로는 올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소위원장 유상범 6월 이후 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6월 이후가 아니라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을 것으로……

○소위원장 유상범 별도로 움직인다 이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제가 잠시……

올해 예산은 올해 또 다른 콘텐츠를 발주하거나 진행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해서 했던 사업은 그것은 그것대로의 사업이고 본예산은 또 다른 사업을,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다 다른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통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이미 6월까지 하기로 했고 6월까지 97.7%나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朴芝源 위원 허성무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이게 원래 2차 추경 때 새로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 본예산 때도 편성이 돼 있다가 현장의 수요나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차 때 또 증액시키고 2차 때 또 증액시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사업 수요조사가, 그러니까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 때 19 대 1로 경쟁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다시 재공모를 했는데, 과제를 54개를 정하고 다시 공모를 했는데 그때도 9 대 1 정도로 아주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2회 추경을 다시 또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朴芝源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업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늘려 주려고 했는데 단년도 회계원칙 때문에 사실상 작년 한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인거요, 기간이 뒤로 밀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어쨌든 산업계 수요를 최대한 반영을 해 주려는 일종의 적극행정의 일환이었다라고 보고 실제로 올해 본예산에는 다 정상적으로 사업기간이 설정됐다고 해서 제도도 사실상 다 개선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하더라도 해당 담당자에게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집행 관리 문제, 징계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위원님들이. 그 이유를 보니까 작년에 추경을 한 번 넣고 두 번 넣었어요. 2차 추경하면서—저희 쪽이겠지요—야당에서 시급하지도 않고 연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 쪽에서는 전액 감액을 요구했는데 정부 쪽에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바득바득 우겨 가지고 이게 편성됐는데 실제 결산해 봤더니 아까 정부 말로 하더라도 십몇 % 밖에 안 하고 80% 이상을 이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정부가 다른 이유를 가지고 박박 우겨 가지고 해 놓고 결산에 국회가 우려했던 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냥 제도개선으로 넘어간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 이상의 그런 조치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준영 위원** 저는 적어도 주의 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처 답변을 해 보시지요. 이렇게 많은 안들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추경을 했으나 집행이 안 돼서 다음에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이어진다 이게 재정운용의 원칙에 맞는 추경입니까?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추경을 할 때 개별 사업에 대한 집행 정도는 당연히 중요하게 고려돼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추경을 만들면 시급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급성을 고려해서 당해 연도에는 다 소진하는 게 재정운용의 원칙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당연하신 말씀인데 당초 예상했고 또 수요분석하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달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처가 어떤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면서 이렇게 결산에서는 그렇게 ‘좀 늘어져서 써도 상관없지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앞으로 이 결산 어떻게 하고 추경 같은 걸 저희가 어떻게 심사합니까?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위원님, 제가 결산에 대해서 어떤 시정조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갖고……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그런 취지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저희가 원칙은 알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제가 이걸 보니까 원래 본예산에 80억이 반영이 돼 있었네요, 202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1차 추경에 165억 원, 2차 추경에 210억 원 그러니까 계속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마 담당 과장이신가 본테 본예산을 가지고 해 보니까 신청 비율이 높더라 그러니까 1차 추경·2차 추경 금액을 확대한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연내 집행률이 58.6%로 끝났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 김경화** 그러니까 전체……

○**소위원장 유상범** 전체 455억 중의 58.6%으로 끝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사실은 210억 원에 조금 더 쓴 거지, 그리. 본인들은 ‘다 쓰

겠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이것 분명히 못 쓰니까 다음에 내년에 본예산에 넣으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다 쓸 수 있다고 자신해 놓고 이제 와서 작년에 다 쓰지도 못하고 올해 이월되니까 이제 ‘6월까지 사업인데 6월까지 다 썼으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 김경화 외람되지만 말씀했던 대로 저희가 예결위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감액의견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사업기간 자체가 국회 의결이 될 때 6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어도 문제없을 부분을 굳이 추경에 뭐 하러 넣었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징계도 이 자체 가지고 불법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주의 정도로, 담당자들이 추경을 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최소한의 정도가 있으니 이걸 주의 정도로 정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고 이게 정리 안 되면 보류해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

○소위원장 유상범 어느 분……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시험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시험적인 사업들이 많고 그리고 많은 부분이 예측이 힘들고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적인 사업을 하는 부처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심사를 하나하나 해 나가면 앞으로 정부부처에서 누가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법을 다 집행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게 좀 안 좋다 해도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키우고 사람들이 먹고살고 그리고 지금 그 돈을 써 가지고 사람들을 고용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살고 문화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키우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뭔가 역할을 하고 결국은 우리 한국의 다이내미즘(dynamism)을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단순하게 그 사람을 하나하나 그렇게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게 솔직히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정태호 위원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보류를 하자는 의견도 드렸고요.

작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나 하면 그러니까 인공지능(AI) 시대로의 대전환이라는 큰 시대적 전환기에서 골든타임이 3년이다 이런 담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험적인 정부 투자 이것들이 되게 강조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많은 진전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삼성이 지금 대박이 난 것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자체도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예측 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특히 AI시대와 관련된 모험적 투자들을 너무 경직적으로 심사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운신의 폭이 너무

줍아집니다. 아까 모태펀드도 마찬가지로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의견 차이가 있으니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말씀대로……

○이종욱 위원 보류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은 일단 좋은 안 좋은 이월이 됐잖아요. 이월이 됐다는 말은 뭐니까? 추정 할 때 빚을 내서 국채를 발행해서 연말까지 못 쓰고 이자 내면서 들고 있다가 그걸 그다음에 넘겨줘 가지고 집행한다는 거니까 이게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건데, 사정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국회에서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어떤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서로 주고받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들도 마음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충분한 의견 말씀 들었고, 차관님이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적극적으로 각 부처를 옹호하는 발언을 세게 해서 주는데 잘 들었습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제가 꼭 그런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중립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사업은 코딩이나 뭐처럼 AI산업 자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AI를 활용한 산업을 확대하자는 차원의 얘기고 이것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융합, 일종의 각 문화산업에 AI 접목하는 것은 이미 이삼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지원을 통해서 잘 가져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좀 엄격하게 말하는 게 잘 보시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했으면 지키지 않고 나중에 그것을 어기고 나서 뒤늦게 그것이 정당하다고 항변하는 것, 이것은 저는 받아들이 수 없다는 부분 하나 있고요.

여러분들이 국회에 와서 지금 오늘도 보면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도개선이라는 게 기존 시스템을 변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은 그것 아니에요. 잘 선택해서 잘 골라 가지고 어떤 집행이 면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이 아니잖아요. 제도개선이라는 게 지금은 너무나 편하게 책임지는 사람 없게 만드는 하나의 시정요구 유형으로 인식이 돼서 그러는데 이것도 보니까 국회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아니고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 행사 용역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의 미국 출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 수행 전력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조직 신설 및 행사일정 수립 과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위원의 공무 국외 출장 시 공무 일정과 개인 또는 소속 기업 관련 일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국외 출장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시정 두 가지 유형 중에 선택이 필요하고 정부 이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출장경비 1300만 원을 변상하도록 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출장을 승인한 관련 책임자를 징계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우선 첫 번째 동그라미 주의, 시정 중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300만 원 변상할 것, 세 번째 재량권 남용한 관련 책임자 징계할 것은 위원장의 공무 국외 출장이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상임위 의견 주의를 참고해서 주의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적법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배준영 위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졸속 조직 출범 및 수의계약 집행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데 출범 후 불과 5일 만에 4억 4000만 원 들여서 대통령을 대동한 화려한 출범식을 개최했는데 이게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긴급한 행사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행사가 대통령 행사인데 왜 시급한 행사인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의 해외출장이 공무냐 이것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고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출장보고서를 봤어요. 출장보고서를 보니까 뉴욕의 한국문화원, LA 한국문화원에서 각각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업무 협의를 했다는 건데 LA 한국문화원에서는 일요일 날 1시간 동안 업무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주요한 일정이라고 적어도 한 2시간 이상 진행된 것을 보면 리퍼블릭 레코드 대표 면담 그리고 이것도 2시간인데 라이브네이션 대표 면담, 레인그룹 파트너 면담 이런 일정들은 다 2시간 이상이고 주요 일정으로 보여집니다.

문화 창달하는 것도 좋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따지 걸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게 과연 공무였냐, 공무로 국민의 혈세가 출장비로 집행되었느냐 볼 때 저희가 굉장히 의문이 가는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 일정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공무 일정을 보내고 귀국한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환수할 것을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朴芝源 위원** 수의계약 체결 관련해서 긴급한 행사 이외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어떤 보안상 목적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朴芝源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출범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긴급한 행사고 대통령이 참석하기 때문에 보안상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보안이 유지되어야 해서요.

○**朴芝源 위원** 그렇군요.

저는 출장보고서를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여비를 지급했다는 그 공무 일정과 공무 외 개인 일정,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개인 일정이 보고서상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제가 보고서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각 만난 그분들이 저희 대중문화교류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위촉되는 대상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야 했고.

그다음에 페노메논이라고 내년 12월에 커다란 팬덤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대중음악계, 팬덤 산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공무고 거기 가는 비행기와 공무 할 때까지의 여비만 국비로 지원을 받았고 이후의 개인 일정이나 돌아오는 비행기는 개인이 부담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朴芝源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한날에도, 같은 날에도 공무상 일정이 있고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정도 있다라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장 강수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일정과 공무 일정의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공무와 사적 업무가 섞이지는 않았습니다.

○**朴芝源 위원** 같은 날에 혼합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장 강수상** 혼재된 건 없습니다.

○**朴芝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처 얘기 들어 보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사안이었던 것 같고 공무와 공무 외 일정이 명확히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변상이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그 뒤에 개인 일정이 잡혀 있으면 당연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개인 일정 보러 가는 김에 출장 달았다고 오해를 하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국외출장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돼서 주의 정도는 받아야 되는 사안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만들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이종욱 위원 사무실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동십자각 있는 데 있습니다, 삼청동 쪽에.

○이종욱 위원 삼청동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이종욱 위원 상근직원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몇 명이에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장 강수상 약 20여 명 지금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무슨 일 하는 거지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장 강수상 K-컬처 관련된 각 업계의 제도개선 사항이나 법 개선 사항들을 접수하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K-컬처 확산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페노메논 행사를 준비하는 기획 총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비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9억 2000은 아닌 것 같은데?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장 강수상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하기 위해서 25년에 편성된 예산이 9억 2000만 원이고요. 올해 예산은 한 37억 정도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올해는 37억 있어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장 강수상 예.

○이종욱 위원 처음에 출범할 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9억 2000 가지고 했고, 그렇지요? 그때는 출범식하고 출장하고 이런 것만 있네요. 그 뒤에 인원 20명으로 확대해 가지고 지금은 삼십몇억 예산 쓰고 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장 강수상 예.

○이종욱 위원 그날, 출장 간 날 있지요. 제가 봤더니, 저는 이것 잘 모르는데 JYP 걸 그룹이 14일 날 신곡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음반 발표. 걸그룹 이름이 걸셋이네요.

그리고 그때 출장 가서 만났었던 그분들이 이 음반 유통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요 일정들이 대부분 JYP 업무 관련 출장이지 어떤, 예를 들어서 주뉴욕한국문화원 업무협의 금요일 날 가 가지고, 아까 중복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금요일 날 보세요. 2시에서 2시 반까지는 주뉴욕한국문화원 업무협의고 3시부터 5시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유통사 리퍼블릭 레코드 대표 면담이 2시간 있어요. 그리고 만찬까지 있어요. 하루에 겹쳐서 같이 있잖아요. 왜 없다 그래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장 강수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을 저희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위촉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촉하기 위한 섭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혹시나 우리가 이런 말 할 것 같아서 사후에 위촉했을 수도 있지요. 그걸 누가 압니까? 그 필요성은 국민들이 필요한 것보다 JYP

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통사라고. 음반 유통사예요.

그리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JYP 회장님은 돈도 많은 분이 1300만 원 출장비 받아 가지고, 사실 돈 때문에 이 일 하는 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하는 명예직인데 그것 가는 데 출장비 1300만 원을 받아 갑니까? 그리고 이렇게 출장비 타려고 일 정도 억지로 만들고 명단도 올리고 위원까지 위촉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고 이런 것은 변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 많잖아요. 변상하세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

○김성희 위원 일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기획사라고 하신 데는, 리퍼블릭 레코드는 그냥 박진영 하는 기획사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미국의 테일러 스윙프트 그다음에 아리아나 그란데, 위켄드 이런 그룹들을 유통하는 회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전에 트와이스가 여기랑 유통을 해서 북미 유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JYP가 연결돼 있을지는 모르지만 UMG 산하의 아주 큰 유통사입니다. 이런 데가 K-컬처를 퍼뜨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K-컬처 수출 50조를 한다고 하면—물론 게임의 비중이 워낙 크기는 하지만—그런 데서 K-pop이 역할을 하려면 라이브네이션도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공연 기획사 중에서는 톱3 안에 드는 굉장히 큰 기획사거든요. 그리고 리퍼블릭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미에서 올해의 레이블상도 받은, 무슨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가 아닙니다.

수많은 유통하는 것 중에 JYP 것을 유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트와이스는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금 박진영이 가서 만나 달라고 한다고 해서 리퍼블릭 레코드가 만나 줄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런 라이브네이션이나 리퍼블릭 레코드와 우리가 연결되어서 K-pop 시장이 전 세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로를 위원장이 만나는 일은 이걸 당연히 공무지요. 본인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오히려 전 세계에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전담해서 한다면 우리가 가마를 태워서 데려가도 모자랄 판인데 가는 비행기만 대 주고 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사실 이게 출장이라면 오는 비행기도 문체부에서 대는 게 맞지요?

○이종욱 위원 문체부가 대세요, 오는 비행기도.

○김성희 위원 하지만 이런 오해를 살까 봐 일정을 중간에 끊어서 그 뒤 일정은 본인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오는 비행기는 본인 돈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박진영의 미국 기획사를 찾아가는 사업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유통망과 네트워크들과 연결을 해서 우리나라의 K-pop을 알리는 일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저도 진짜 K-pop 좋아하고요. 박진영 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인사들이 모두 나와 갖고 우리 K-pop 진흥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상임위 문체위가 아니잖아요. 문체위가 아니라 결산을 하는 자리라서 저희가 남들이 보기에는 좀 꼬장꼬장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여도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걸 따지는 정말 괴로운 자리입니다. 지난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종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리퍼블릭 레코드라는 데가 세계 굴지의 유통사고 유명한 회사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정을 보고 파악을 하면 11월 14일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1월 14일을 보면 3시부터 5시까지 리퍼블릭 레코드 대표를 면담하고 17시 30분서부터 20시까지 리퍼블릭 레코드와 만찬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게 JYP 엔터테인먼트의 GIRLSET이라는 가수인데 이 만찬을 한 날이 JYP 그룹의 이 걸그룹이 미국에 앨범을 발매한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전파를 위해서, 저희가 따지 거는 게 아니고 그 적정성을 따진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있어서는 오해가 있으면 안 되고 오해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해명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 회의의 원칙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뭐 다른……

지금 대립되는 의견들로 인해서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차관님, 출장 주요 일정표는 한번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거 보면 11월 16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일요일 날 주LA한국문화원 업무 협의, 그리고 17일은 월요일인데 라이브네이션 대표 면담, 매기 강 감독 면담.

대중문화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박진영 씨가 그동안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던 글로벌한 음악산업의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듯이 패노메논 행사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문화원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사실은 그런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속에서 이게 가능한 부분이고 그 행사가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비이락이라고 14일 날 만났는데 그날, 리퍼블릭 레코드와 합작을 해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던 4인조 GIRLSET이 그날 당일 공교롭게 앨범을 발행을 해요, 2집 앨범을. 그것도 제목이 Little Miss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로 간 건지, 자기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미 옛날부터 협조, 협력을 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키우는 그룹의 앨범 발매를 위한 기념으로 간 건지, 이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공무냐 개인 업무냐 이렇게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우리 지적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일요일 날은 문화원 업무 협력으로 1시간 만났다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고 결국은 중요한, 유력한 예술인들을 만난 그것의 가치를 폄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딱 공교롭게 본인이 하는 사업과 연계돼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이런 과정을 보면 누구나 다 비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은 분명히 있고.

이것은 박진영 씨도 일반예술인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 부분은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얘기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니까 이 사안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많고 여러 가지 논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위원장님, 부처에서 수용하겠다는 하고 넘어간 1건 중에 저희 기획예산처가 꼭 의견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회를……

○소위원장 유상범 그게 뭐였지요? 제도개선으로 우리가 정리하지 않았나?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부처에서 수용한다고 그래서 전문위원이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니다. 123페이지 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정 고갈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일반회계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요. 제도개선 요구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사업과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 운영 중의 일부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것이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부처에서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저희들은 문화예술기금의 재원구조 개선 부분들은 별도로 중요한 사안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문무용수지원센터나 이런 사업들은 현재 문예기금의 법정 용도에 정확하게 일치한 사업으로서 기금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은 기금에서 수행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무실 공간 임차료와 콜센터 운영 용역비 사업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용자 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용자 사업은 그대로 두고 일부 운영 사업만 일반회계로 넘긴다라는 것들도 재정운용상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기획예산처에서 아마 예산과 관련되어서 제도개선을 수용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 하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차관님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희들은 기획예산처 의견하고 조금 다른데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주로 창작 쪽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고, 그게 늘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쓰이는 용도 중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같이 이렇게 창작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예산은, 실제로도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집행하지 않고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집행하니까 돈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 운영비도 이게 사업 운영비 같은 이런 돈은 창작 지원과 직

접 연결되지 않으니 이런 돈만큼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한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기금에서 해 왔던 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려니까 기획예산처가 반대한다는 얘기구먼,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간의 의견이지만 부처에서, 상임위에서 사실은 정리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기획예산처 입장대로 정리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수용을 다 한 상태에서. 그것은 추가로 부처 간에서 협의해서 나와야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종욱 위원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양 부처가 협의해 와도 국회에서 받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회계로 이관할지 안 할지는 내년도 예산 그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예결위 소위하고 예산소위하고는 다르거든요.

○소위원장 유상범 다르지요.

○이종욱 위원 결산소위가 예산소위를 기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단은 그때 그분들이 하시면 돼요. 여기서 기속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처와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결산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필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일반회계 이관 자체는 결산에서 판단할 대상은 아닌 건 맞네요, 지금 말씀대로. 회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예산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예산 전문가가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정태호 위원 그냥 삭제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심의 때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예산심의 때 반드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그때도 지금처럼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최종 결론을 내서 가져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 꼭 지켜세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다 끝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상범 누구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2차관입니다.

저희 이게 심사 관련해서 아까 모태펀드 영화계정 논의하시면서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169페이지에 스포츠편드 관련해서 저희는 주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 부분이 일단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스포츠계정이 금년도에 청산을 하는데요. 이미 5월 달에 하나 청산한 부분은 수익률이 24%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시정요구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가더라도 영화계정 아까 그 부분하고 맞춰서 제도개선이 돼야지, 이게 주의가 되는 게 맞는지 그것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 어디 얘기하는 거야?

○소위원장 유상범 169페이지.

지금 같은 사안이지, 이것?

○이종욱 위원 제도개선으로 해요.

○배준영 위원 예, 제도개선으로 하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은 같은 사안, 같은 내용이네요,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같은 내용이지만 저희들은 수익률이 24%……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나 돈 벌었는데 왜 주의냐 이런 얘기구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시정을 하라고 하시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잠깐만요. 이게 스포츠계정의 경우에는 지금 총 몇 개의 자펀드가 운영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올해 청산된 게 지금 3개로 알고 있는데요. 5월에 하나 됐는데 24%고 그리고 10월 달에 2개의 펀드가 청산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2개는 10월에 되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유상범 5월에 된 것은 수익률이 24%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10월에 된 것은 수익률을 예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적자는 아니라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대로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안, 스포츠산업금융지원과 관련된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으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앉으세요.

국가유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입니다.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채수희**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 채수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는 총 2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2건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181페이지.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연번 1번, 국가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신안해저유물 방문자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2025년 교부액을 전액 이월하였고 집행실적 점검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신안해저유물 방문자센터는 전시할 유물이 전무하여 미디어 콘텐츠만으로 구성하여 건립할 예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동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예정된 공사 일정을 적기에 추진하는 등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현황과 집행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점검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사업관리 구조를 개선할 것. 여기에는 제도 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유형을 주의·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10월 달 안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 이거는 사실은 국가에서 이런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거니까 그거는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월하고 집행이 부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용상으로는 제도개선보다는 그냥 주의 받고 마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뭘 제도개선을 할 게 없잖아요. 다 지금 설계도 끝났고 이제 한다면서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사실 상임위에서는……

○**이종욱 위원** 지나간 거는 그냥 주의 받고 마세요. 뒤돌아서서 제도개선 하려고 그러

면 머리도 아파요.

○소위원장 유상범 제도개선 내용을 따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산 때까지, 9월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사실 상임위에서 논의됐습시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으로 상임위에서는 애기된 것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원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 안을 우리 결산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안을 해서 9월 달에 보고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정확한 지적이고 이렇게 사업이 마구 지연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신안해저유물을 한 점도 전시 안 되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실물 전시는 없고 디지털 콘텐츠로……

○소위원장 유상범 디지털 전시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지역구 위원님도 여러 분 계실 테니까 여기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당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진행을 하는 것이 이렇게 참 느슨하고 안타깝게 진행이 되는 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발주를 한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9월 중에 마련을 하셔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결산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그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으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페이지는 182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국회 결산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과 작년도 이월 규모를 고려한 보조금 교부를 지적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전년도 이월액과 사전절차 진행 상황 등을 실제 교부액에 반영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잔여 보조금 교부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집행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동일한 사유로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유형을 주의·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해서 실제로 실집행률이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개정해서 예산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혹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전에 실집행률을 많이 제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는 있나요, 준비한 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것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실래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지금 바로……

○소위원장 유상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본인은 지금 상습적인, 예산 처리가 지연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올해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 물론 작년 결산이긴 한데 그래서……

빨리 직원 통해서 배포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23년 결산하고 24년 결산도 다 지적받았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이종욱 위원 뭐로 받았습니까? 주의예요? 뭐예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제도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두 번 다 제도개선을 받았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지금 세 번째네요. 세 번째인데 또 제도개선 하자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23·24년도의 실집행률이 각각 39%, 63.8%로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제도개선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번에는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25년도에는 75.8%까지는 올렸고요 올해는 80%까지……

○이종욱 위원 아니, 올리는 게 아니고 시정요구유형을 올려야 되겠다고요.

23년·24년·25년 세 번 연속 우리가 제도개선을 때리기도 좀 그렇고 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朴芝源 위원 실제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를 개선하신 건 맞는데 이번에는 지침을 명기해서 바꾸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朴芝源 위원 지침에 뭐라고 바꾸실 거예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사업의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하도록 그런 근거조항을 넣는 겁니다.

○朴芝源 위원 교부하기 전에 전년도 이월액이나 이런 것들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에 교부액 감축하거나 이런 것들 명문화하실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朴芝源 위원** 그 지침을 더 추가한다고 하니 제도개선으로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이걸 적절치 않고.

지금 제도개선을 평범하게 부담 없이 그냥 하는 형식적인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똑같은 지적을 3년 연속 받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로 정리해 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그래서 무슨 구체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세 번 연속 반복된 것에, 제도개선을 약속했는데 잘 이행이 안 돼서 세 번째 다시 적발이 됐다면 적어도 주의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이것은 유산청에서 어떻게 모든 간에 제가 봐서는, 국회에서 시정요구를 똑같은 걸 세 번 한다는 것도 어디 가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로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정태호 위원** 제가 한번 여쭙볼게요.

이게 자치단체 보수정비 지원 사업인데 왜 집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이게 22년도 전까지는 우리 보수정비 총액 사업에 그때 포함돼 있다가요 22년부터 세계유산만 별도로 보수정비 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하다 보니까, 세계유산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유물이 발굴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겨서, 지자체 준비가 덜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초기에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세 번째가 되는데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존관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든 그런 보수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게 발견된다든가, 문화유산이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래서 사실은 첫해 연도에 저희가 343억까지 편성을 했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예산 액수는 계속 줄여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또 집행률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여하튼 일부라도 계속 개선은 돼 가고 있는 거고 이번에 지침까지도 바꾸겠다고 하니까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다가 주의 주면 별로 그 노력을……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그것은 올해 얘기고 내년엔 ‘잘했어’ 하고 평가받는 건 결산을 할 때 평가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정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너무나 다 내용을 잘 알 텐데 굳이 이렇게 제도개선으로 한 이유는 맥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소위원장 유상범** 대단하게 문제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편안하게 해줬긴 했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3연속 제도개선을 얘기하고 나면 지난 결산 감사를 매년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유산청에서 그냥 주의 정도를 받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 그것 죽어도 안 됩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동안 저희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가지고 좀 더 잘하라는 의미로 주의를 주신다면 저희 청에서도 그렇게……

○**소위원장 유상범** 기본적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요건이 같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건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런데 제도개선은, 말씀드리잖아요. 제도개선으로 한다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대충 넘어갔는데 제가 어제부터 ‘제도개선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 가지고 약속하면 다 제도개선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

○**정태호 위원** 일단 좀 보류로 해 놓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이걸 뭐 보류로……

○**정태호 위원**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제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허성무 위원**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가능하면 질문 안 하고 빨리 끝내려고 가만있는데……

문화재 보수가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자격이 있는, 개인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업체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수리업자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허성무 위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허성무 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특히 그동안 유산청에서 하던 그것을 지자체가 맡아서 하니까, 지자체는 사실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맡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어쨌든 세계유산은, 그러니까 수원 화성이나 남한산성, 불국사 이런 것들이 세계유산인데요. 규모도 크고 또 중요성도 높기 때문에 그걸 설계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하고 실제로 수리업자를 선정해서 수리까지 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초기에 집행률이 낮았던 걸로 보고, 그 어려움은 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태호 간사께서 여러 가지, 여당 간사로서 기관이 운영하는 데 고민을 같이 말씀하셔서 이걸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주의를 받는 것도 감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장님도 여기 그냥 나왔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으니 보류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개정에 따른 예산지원체계 및 관리체계 마련 필요인데요. 지적사항을 보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을 전제로 해서 시정요구사항이 ‘법 개정에 대비해 시행령을 검토하고 투명한 정산·회계 검증제도 등을 마련하여 관람료 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전제로 해 가지고 시정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 의견은 어떻게 됐냐 하면, 국가유산청에서는 관람 지원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고 그리고 기획처 검토의견은 아직 법률도 통과 전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마련하나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3번이.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위원장님, 기획예산처 조금만 보완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현재 이 사업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그에 따른 문화유산 관리주체한테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그런데 이 법 개정이 바뀌게 되면 현재는 문화재 관리에 대응한 민간보조금이고 그에 따른 보조금 차원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이 바뀌면 이제 보전금 형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정부 예산 지원의 성격이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할 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도 정부 내에서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쟁점이 다소 큰 사안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제시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두 기관에서 의견 제시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삭제해 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네요, 양 기관에서?

그러니까 제 의견에 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인가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아니면 삭제하지 않더라도……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삭제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저희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결산에서 이렇게 지적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유산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사실 상임위 때 저희가 이 부분은 수용곤란으로 하지 않고 수용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시정요구사항이 방만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투명한 회계 검증 제도 등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 취지를 공감해서 수용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제는 문화유산법—법사위에 지금 계류돼 있는데요—개정을

전제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우려도 있고 또 저희 청도 신중하게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획예산처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보류했다가 최종 검토할 때 다시 한번 의견 듣고 처리하겠습니다.

이 사안 보류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5시 20분에 시작하고 5시 20분부터는 쪽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따로 안 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입니다.

○성평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최은주 기획조정실장 최은주입니다.

○성평등가족부성평등정책관 조민경 성평등정책관 조민경입니다.

○성평등가족부성평등문화협력과 배진경 성평등문화협력과 배진경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성평등가족부에 대해서는 총 4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보고 대상은 1건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여성사전시관 사업입니다.

지적 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2025년도 집행률이 5.3%로 저조하고 2022년부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며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부지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건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되어 설계비 등 총 14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박물관 건립부지를 공공주택 공급부지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부지 변경으로 이미 집행한 설계비 등 14억 600만 원의 국가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기존 설계성과의 재활용 가능성과 실제 손실액을 점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 등 필요한 책임조치를 실시할 것, 여기에는 변상과 시정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하고 정부 이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시정요구유형을 상임위와 같이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성사박물관 건립부지 변경은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의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고의·중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 등 변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14억 600만 원의 국가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위와 책임소재를 규명,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 등 필요한 책임조치를 실시해서 14억 600만 원의 예산 투입을 고려해 추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등 차질 없는 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진행사항 등 추가 시정요구 조치사항을 상임위와 해당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2019년부터 해 온 사업이에요, 갑자기 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설계는 언제 끝났습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24년?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25년에 끝났습니다. 건축심의하고 건축허가까지 접수한 상태에서 지난 25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불광동 부지가 포함이 돼서……

○이종욱 위원 설계까지 끝나고 총사업비 협의까지 했고,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실시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25년도 예산은 어떤 내용이었지요? 공사비가 일부 있었나요? 착공소요까지 올 해 있었네요,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착공소요까지 있었는데 25년도에 5%밖에…… 착공소요는 뭐였지요? 9200만 원은 뭘 집행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공사비 일부를 부담을 했는데요……

○이종욱 위원 착공했어요, 그러면?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아닙니다. 전시설계를 하는 데 선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9200만 원.

○이종욱 위원 공사 착공은 안 했고?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게 1·29, 금년 1월 29일이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1월 29일 주택공급 방안에 들어갔잖아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이종욱 위원 국토부랑 협의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난 25년 하반기부터……

○이종욱 위원 하반기부터?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9월 7일 날 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요. 그때부터 협의를 했고 그리고 건축허가도 그때 은평구청에서 중단을, 홀당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 전에 설계는 끝나 있었고,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총사업비 협의하고 그러는 중에 9·7 계획 발표하면서 이게 후보 부지로 들어간 모양이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그때 쪽 협의하다가 1·29 대책에 들어갔다는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이종욱 위원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 다른 용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5년간, 6년간 설계할 것 다 했고 모든 기관 간에 협의까지 다 끝났는데 이것을 내놔라 그러면…… 막았어야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여성정책연구원 부지 600평을 빌려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해서 했는데 이 불광동 연구단지가 주택공급계획에 포함이 되면서 이 부지는 1300여 호의 주택을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사결정은 우리가 아니고 다른 데서 한 거예요, 부지 자체가?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것은 아마 국토부에서 이 불광동 연구단지를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부지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전에 여성사박물관을 거기다 짓기로 했잖아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런데 거기에 짓기로 한 부지가 여성정책연구원의 부지를 우리가 일부 받아서 했는데 여성정책연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단지 부지에. 그래서 부득이 여성사박물관 부지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변경은 지금 세종시로 옮겨서 건립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또 은평구에서 세종시로 가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 자리에서는 거기가 주택공급지로 되면서 주택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여성정책연구원도 옮겨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성사박물관 부지도 옮겨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여성사연구원은 원래 세종으로 가야 됩니까, 기관 성격이?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어디로 갈지 모릅시다마는 거기에 건립하기로 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던 여성사박물관은 옮겨야 했고 그 대체부지로 세종시로 지금 협의를 다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로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성평등은 여성부 입장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여성계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숙원사업인데 이게 5년간, 6년간 쪽 해 오던 것을 다 한 방에 갈아 엮어버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국토부보고 무슨 대책을 내놓으라 그래야지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그런데 국토부도 협의를 해서 세종시 어진동에 부지를 좀 더 넓게 해서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옮길 부지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접근성도 좋고 또 여성사박물관을 좀 더 크게 짓는 데는 충분한 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건립 기간이 늘어나지만 원래 여성사박물관의 취지에는 더 맞게 설계하고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차관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 그림이 잘 안 그려지고 이게 너무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한 번에 다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라고 해서 여성사박물관 기다리던 분들 실망도 큰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 내의 업무니까 변상은 성격상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시정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던 것을 이런 식으로 무계획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준영 위원 저도……

저희 사무실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은평구 불광동 소재 기관의 노조에서 찾아왔는데, 4개 공공기관이 왔는데, 이게 뭐냐면 두 번 옮겨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급계획에 의해서 한 번 더 옮기고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의해서 세종으로 두 번 옮기고, 두 번이나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토위에서 국토부장관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변상을 하는 주체가 성평등가족부가 아니고 원인 제공을 한 부서에서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짓지 말라는 통보는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국토부에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받으셨어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지난 25년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고요. 또 올 1월 29일에 주택공급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의 그런 계획에 따라서 그 부지는 주택

공급부지로 활용이 되고 거기에 있던 연구기관들은 모두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 선 것입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그렇게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연락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짓지 말라고. 그렇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국토부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재정부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변상을 해야 된다면 원인제공자가 변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원인제공자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말미암아서, 저것은 올해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주택공급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 국가 지금 많이……

○**이종욱 위원** 14억 원.

○**배준영 위원** 14억이 낭비가 됐는데 그것은 혈세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혈세는 맞는데요 그게……

○**배준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국토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 원칙을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이 원칙은 부처 간의 협의에 따라서 된 거고 더 좋은 공익을 위해서 정책 결정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변상하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꼭 이전에도 없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정책 방향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고, 아마 미리 설계를 한 경우도 옳길 때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은 이익형량의 문제이고 정책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 묻기도 힘들고 특정 부처에게 묻기도 힘들고 결국 정부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 결정도 하고 조정도 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이 정도뿐이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芝源 위원** 변상이라는 게 직무 담당자가 고의·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야 돈을 물어내는 게 변상 아니에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朴芝源 위원** 저는 처음에 변상 이야기를 보고 여기 성평등가족부 담당자한테 변상을 시킨다는 뜻인가 하고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여기 담당자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정부 정책이 변화되는 건데 그걸로 변상 조치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시정이라는 것도 사업을 원상 회복을 시킨다거나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한다거나 환수를 한다거나 보통 그런 것들을 시정 조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주의사안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주의라는 게 그 전에 너무 건립이 지연되어 왔다는 점에 대한 주의 그리고 기존에 설계 성과를 얼마큼 재활용할 수 있는가를 따져서 만약에 예산 낭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점에 대한 주의 이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담

당자에게 변상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에 상응하는 시정을 요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이네요.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김성희 위원 없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누구 책임이냐는 것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돈이 14억 없어졌잖아요. 정부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런데 집 짓는다고 진짜 필요한 데 민간 재개발·재건축 하면 엄청나게 많은 주택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막아 놓고 여기도 잘 짓기로 해 놓은 여성사박물관 부지도 없애고 용산공원에 있는 공원 없애 가지고 집, 아파트 만들겠다 그러고.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이렇게 엉뚱한 데 가서 기존 계획 다 없애 가지고 이제 와서 닥치고 공급하겠다고, 공급이 닥치고 됩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5년은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전월세, 임대주택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뜻인데 기존 계획도 다 없애고.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국토부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를 떠나서 정부 전체로 통으로 국민 돈 14억 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또 그동안 여성사박물관 기다리고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실망도 드리고 5년 전, 6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부지 잡고 설계하고 해야 되잖아요, 총사업비 협의해야 되고. 그런 것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정부 전체로? 그것을 지적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당장 어제오늘만 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민간 용적률 1.2배 상향 조정하는 것, 이것 오세훈 시장 안입니다.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협상도 안 하고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따져 묻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1·29 주택공급 대책 같은 경우도 6만 호를 공급하면서 특히나 은평 지역에, 여기 같은 경우는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 여기가 불광역하고 은평역, GTX-A 붙어 있는 지역에 청년들이 또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관악세무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후 청사들 부지를 다 조금씩 잘라 내서 확보하는 것, 이것 민주당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더 많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이 지난 5년 동안 주택을 공급 안 하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런 속에서 그렇게 찾아서 하는 노력 하나하나를 전부 다 찾아서 다 정계를 하겠다고 하면 과연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가 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 건은 저는 정계로 이르는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준영 위원 성평등가족부 입장에서는 여성사박물관이 숙원사업이었잖아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염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셨던 분들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여성사박물관 민관 합동 건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에 따라 가지고 부지 변경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세종시의 새 대체 부지까지 직접 위원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확인하고 또 부지매입비까지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총사업비도 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추가 재정 소요 없이 2030년까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1억 4600만 원의, 이게 일종의 매몰비용인데……

○배준영 위원 14억이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예, 14억 600만 원인데요. 이 매몰비용을 최대한 살리고 또 추가 재정 소요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여성사전시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의미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은평구로 정해졌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충분하게 의견을 다 제시하셨고요, 의견의 일치를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이 변상과 시정과 관련된, 설계비를 결국은 낭비하게 된, 결과론적으로는 낭비하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지요?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소위원장 유상범 주의로?

○성평등가족부차관 정구창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주의로 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알겠습니다. 내용을 내가 시정으로 잘못 기재해 놔서 그것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재 양 위원님들 간에 논리가 시작되면 논의가 너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셨어요?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입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차범준입니다.

○**법무부기획재정담당관 강익곤**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 강익곤입니다.

○**법무부검찰과장 나하나** 법무부 검찰과장 나하나 검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 하셨지요?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법무부에 대해서는 총 5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2건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조은석 특별검사, 민중기 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요구에 대해 법무부는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 모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제출하지 않았고 익명처리, 비공개 열람, 항목별 제출 등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 및 3대 특별검사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가기관도 모두 국회 결산심사의 대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익명처리, 비공개 열람, 항목별 제출 등의 방식을 통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시정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하고 정부의 이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3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비록 법무부가 형식적으로 특별검사 예산을 소관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제도 및 법률 취지에 따라서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법무부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번까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3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제출을 국회에서 시정요구했고 법무부도 익명처리 등을 거쳐 제출하겠다고 조치 완료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결산에서는 3대 특검이 총 42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음에도 모두 제출 불가라고 하고 익명처리라든지 비공개 열람, 항목별 제출 등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합목적으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전년도 국회 시정요구를 조치 완료로 보고하고도 이를 사실상 뒤집어서, 그래서 국회의 결산심사를 저해한 경위와 책임자를 조사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그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에 대해서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국회법 128조 등에 따른 적법한 서류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고 수사기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즉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 차관님, 지금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년 결산에서 시정요구했잖아요. ‘투명하게 공개 제출할 것’ 시정요구했는데 조치 완료 뭐 하셨지요? 조치를 뭘 완료했습니까, 검찰?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더 자료 제출을 하라는 법사위 등과 예결위의 요청이 있어서요 금년도에 구체적인 집행 일시와 해당 부서, 명목에 대해서도 기밀이 필요한 부분만 비실명 등 익명처리를 해서 법사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법사위에?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이종욱 위원 그걸 조치 완료로 하신 거예요, 검찰 쪽은?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특검은 그것도 안 되는 모양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특검 측에서는 수사자료 수집과 수사의 진행, 공소유지를 위해서 기밀 유지가 필요하고 앞으로 업무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특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닙니다. 8월 25일에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중에 국민의힘 엄태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공문 등을 작성해서 3대 특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전달만 하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 뒤에 특검에서 아직 조치를 했다는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내역도 불만족스럽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특검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무슨 무소불위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할 수 있으면 특검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통보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뭐 다른 수단이 있을까요? 강력한 법무부 의지를 전달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특검에?

○법무부차관 이진수 특검 제도의 특성과 독립성 보장이라는 부분 때문에 법무부가 형식상 지금 부처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관여나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여기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요구로 시정, 주의 이렇게 내리면 그걸 집행할 책임은 또 법무부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같은 징계라든지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어디서 담보를 받지요? 우리가 여기서 시정요구하잖아요.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이라고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거기서 특검이 뭐라고 하든 국회는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했을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고요? 그때 법무부는 가만히 빠져 있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일단 특검이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런 사례는, 전례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특검의 예산집행이라든지 국회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지적사항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특검이 기간이 끝나고 실제 집행 책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묻지요? 방법이 없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해산이 되고 난 뒤에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이 남아서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것 말고 이런 예산집행이나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든지 책임을 묻겠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무부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 법무부를 걸어 놔야 나중에 특검이 해산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조치를 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달만 하고 뭐 없는 듯이 있을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특검의 구성원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법무부가 어떤 징계라든지 자료 요구라든지 어떤 집행권을 행사…… 어떤 제재의 통로 기관이 된다는 것이 또한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 건 있겠지요.

그러면 특검이 해산하고 났을 때 필요한 영수증이라든지 회계 처리한 이런 거는 어디 안 줘요? 보관하거나 어디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없어집니까?

○**법무부검찰과장 나하나** 공소제기 여부 결정한 이후에, 상당 기간 이후에 보고하도록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보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법무부검찰과장 나하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보고?

○**소위원장 유상범** 관련 자료는 다 이첩하도록 돼 있잖아요. 나머지 자료든 법무부에 다 보관이 돼 있을 텐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형식적으로 소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담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 저는 법무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없으면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제도를.

그 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저도 잠깐……

저는 이거야말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특검이 다 이렇게 벌려 놓은 거를 나중에 회계라든지 이런 책임을 전혀 물을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러면 특검에 대한 결산은 하

지 않는 게 맞지요.

그래서 차관님, 앞으로 특검에 대해서 이런 결산의 사후조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실행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보고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님 질의에 급하게 확인을 해 보니까요, ‘회계보고 관련해서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일까지 비용 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독립기관성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도 대통령실로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급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짧은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제도개선을 말씀드리는 게 여기 국회에서 결산 관련해서 시정이나 주의라든지 징계라든지 여러 조치를 내려 주면 실질적으로 그게 특검이 종료를 했다 그래도 그 효력이 미쳐야지 결산이 이게 말하자면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그러면 지금 그거는 수검기관인 법무부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방안을 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얼마 전에 헬기 두 대를 타고 연평도에 갔어요. 한 대만 가면 되는데 한 대는 대기 중인 것을無理하게 타고 갔는데, 갔다 왔는데 거의 헬기 시간만 6시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스테이 한 시간이 거기 한 4시간 정도 스테이 했다는 건데 아침에 배 타고 8시 반에 들어가면 2시간 걸려서 적어도 5시간이나, 6시간 배 타고 와도 하루에 갔다 올 수 있어요. 내란특검은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특검에서 그렇게 한 거는 그 400만 원에 대해서 변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실질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면 결산을 뭐 하러 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법무부에서 지금 수검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민주당 위원님들 따로 의견 있습니까?

○**김성희 위원** 보고를 받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되 지금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특검이라고 해서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독립된 기관이지만 국가기관으로서, 세금을 사용하는 부처로서 당연히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자료를……

그러니까 특검은 기간이 지나면 해산을 해요. 쉽게 말해서 제출명령·시정명령을 받아도 그것을 이행할 주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썼던 회계 자료를 보관·2관리하는 관공서, 부처가 그 명령을 받을 주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저도 파견 나갔습니다만 특검에서 그 사이에 사용한 각종 경비 처리에 대한 서류들이 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거는 국가공문서이기 때문에 보존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빨리하셔서 특검에서 사용한 내역서가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의 시정요구가 가면 법무부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협조를 받아서 그것이 제출될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가지고, 저희들 소위가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특별감찰활동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예산 낭비 방지를 시정요구하였으나 스스로 제시한 2026년 상반기까지 이전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임차료 및 관리비를 계속 집행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실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도 동일한 수준의 사무공간을 유지함으로써 예산이 계속 집행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법무부는 특별감찰관 사무실 유지와 관련 비용의 집행을 소관하는 책임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 여기에는 정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상임위의 주의 의결은 존중하며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결위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숙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간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 진행 등으로 인해서 사무실 이전 등의 결과를 내놓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상세한 내용은 회의장에 배석한 특별감찰관실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자, 그러면 누가 나오셨지요?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 김선아 특별감찰관 운영지원팀장 김선아입니다.

저희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이전에도 임대료 지출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후 즉시 정부청사 유휴 공간으로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24년 하반기에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가 진행되었고 또 정부청사 내에 공실이 없어서 기존 계약 만료일 내 사무실 이전이 곤란해졌습니다. 따라서 계약 유지 의무기간 최소화 조건으로 사무실 임차 재계약을 진행하고 또 정부청사 공실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상반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청사 공실 부재 상황이 지속되었고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임차료 절감을 위한 사무실 이전과 함께 기관장 임명

시 신속한 조직 정상화를 위해서 사무실 유지 필요성도 함께 고려를 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기관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관장 미임명 또는 장기 공석 상황도 전제로 해서 정부청사뿐만 아니라 국유재산 등 임대료 절감 가능한 사무실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정부청사에 휴식, 빈방을 못 구했다는 것은 세종로 청사에 있는 그 건물에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의미입니까?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 김선아 처음 23년 결산에서 지적을 해 주셨을 상황에는 서울청사와 과천청사 중심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전국에 있는 청사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전국에 있는 청사 중에 들어갈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 김선아 정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기관들 우선으로 청사를 재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기에는 계획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제 상식으로는,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정부청사들이 있고 그중에 들어갈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 김선아 저희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계속 공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고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연간 정부청사의 이전 계획이나 혹은 그 사무실에 순차적인 입주들을,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셨을 때 즉시 정부청사본부와 논의를 시작했고 그해에, 24년도 9월에서 12월까지의 공실이 없어서 저희가 그 이후 상황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저희가 24년 말에 이슈가 있다 보니 정부청사본부에서 청사 기관, 조직의 재배치 까지도 논의가 되면서 저희 검토가 약간 보류되었던 상황도 조금 있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여러 가지가 좀 꼬인 것 같은데 특별감찰관실에서 원하는 면적이 몇 평 정도였습니까?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 김선아 저희 운영지원팀 현재 인원은 파견 공무원 2명과 기간제 공무원 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지원팀만을 위한 사무실로 60평 정도를 찾고 있었는데요.

○배준영 위원 3명이 쓰는데 60평을 찾고 있었다고요?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 김선아 왜냐하면 저희가 1인당 차지해야 되는 면적이 있고, 저희가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같이 가지고 움직여야 해서 서버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조직 정상화가 됐을 때에는 인원이 파견 공무원 20명 그리고 특별감찰관 정원 8명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분들……

○배준영 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3명 정도 근무하신다는 거를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특별감찰관실을 이 정부에서 특별히 한다는 어떤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한다는 거를 전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스텝이 꼬인 것 같은데 하여튼 60평을 3명이 쓰고 그것을 전국에 있는 정부청사에 다 알아 봤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었다? 글썄, 저는 하여튼 이해가 안 갑니다.

○**김성희 위원** 일단 2024년 10월경에 국민의힘도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를 한 바가 있고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즉시 특별감찰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래저래 찾으신 거지요?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 김선아** 예, 저희가 이전과 함께 특별감찰관 사무실의 유지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운영지원팀만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 확장 가능성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김성희 위원** 그리고 서울청사, 과천청사 말씀하시는 게 특별감찰관 하는 일이 대통령에 대한 감시니까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 김선아** 예,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면 국회와 청와대의 공방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못 구한 문제를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저희가 조금 지난 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요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하기를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자,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검토가 필요한데요. 특별감찰관은 법률로 독립된 기관으로 돼 있지요?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업무상 지휘 감독하는 관계가 있거나 예산상의 배정을 해 주거나 이런 관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니요, 저희도 형식상으로만 소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예산 배정을 위한 통로로만 활용이 되는 것이지 별도로 특별감찰관 사무실 유지와 관련해서 관리 주체가 되거나 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종욱 위원** 하나 여쭙볼게요.

어쨌든 3명이 있는데 264평을 임차하고 있어요. 금년에 이·전용은 왜 했습니까, 3억 300만 원?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 김선아** 저희가 특별감찰관님이 의원면직되면서 기관장 공석인 상황이다 보니까 25년 예산을 편성받을 때 전해에 준해서 편성받게 되었고 기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필요한 만큼 편성할 수 없었고 예산이 저희가 내야 하는 임차료보다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다른 세목에서 조정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처음 생긴 기관도 아니고 몇 년째 계속 있는데 임차료가 줄여져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 김선아**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전엔 더 있었는데?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 김선아** 감찰관님이 계실 때는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감찰관이 있을 때는 힘이 세니까 예산편성이 잘됐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원래 있던 예산에서 좀 줄여 났잖아요. 더 줄여서 살라는 뜻인데, 4억 400만 원이 있었는데 3억 300만 원을 이·전용 해 가지고 7억으로 살았어요, 세 분이 264평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원인이나 변명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렇지만 첫째 사업도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국회에서 4억 400만 원 줬어요, 이걸로 살라고. 세 분이서 이백 몇십 평에 살면서 3억 300만 원을 이·전용 해 가지고 7억 600만 원으로 살았어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게 사실 특별감찰관은 법률로 독립된 기관이고 그 특성상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요, 아마 별도로 돼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특별감찰관이 없어서 버리니까, 기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이 유지되니까 지금 기획예산처, 그 당시 기재부에서 아무도 관리 안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자기들이 예산 전달하는 통로일 뿐 관리 책임을 지지를 않고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 예산은 낭비되는데 그냥 방치돼 버린 거예요. 이것 사실은 기재부가 제일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점이 있는데……

정말 차후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긴급 예비비를 편성하든지 뭘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사실 아무도 관심도 안 두고 뜨거운 감자처럼 놔두고 그냥 방치해 버리니까, 3명이 240평을 쓰는 걸 그냥 거의 10년을 가 버리는 건…… 3명이 쓰는데 국가 예산이 매년 7억씩 돈이 나간다는 게 국민들이 보면 이것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지금 여기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만 법무부가 예산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 실질적으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데 법무부 공무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요청한 대로…… 제가 봐서는 징계 요구에 대해서 위원들이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그 부분, 그건 분명하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책임 물을 사람이 없으니 형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법무부에서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서 부처 의견대로 삭제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계 요구 부분만.

○이종욱 위원 주의 아니에요, 주의?

○소위원장 유상범 그 위에는 살려 주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부연설명 한 가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유상범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차관급인 특별감찰관은 소속이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아, 대통령실로?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요 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소관 부서인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이 기관이 정확하게 지정되려면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기획예산처랑 행안부에서 결정해야 되나요, 특별감찰관 부분은?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 정확하게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요. 추후에 필요하면 관계 부처하고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행정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잖아요. 지금 국가 예산이 10년 동안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낭비가 됐는데 문제는 그 낭비되는 과정에서 소속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고. 그러면 이 예산 낭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역대 대통령이 몇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것도 안 맞고. 그런데 법률상의 관계에 있는 법무부에게 그걸 책임지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고 그래서.....

○이종욱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23년 결산에서 저희가 시정요구했잖아요. 그렇지요? 시정요구하면서 예산을 자른 것 같아요, 24년 예산을. 아닙니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좀 확인을 해 주세요.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 김선아 예.

○이종욱 위원 결산에 시정요구하면서 예산을 잘랐어요, 살림 줄여서 살라고. 그런데 연도 중에 이·전용 했잖아요. 이것은 국회의 뜻하고 배치되는 행정부 행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다는 거지요, 상임위에서 했던 주의 부분은?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여기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위원님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한 부분은 100% 타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 결정은 보류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종욱 위원 그 이·전용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 찾아보고.

○특별감찰관운영지원팀장 김선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담당 운영 과장한테 얘기한다고 답이 나오겠어요?

○이종욱 위원 법무부 다 들었어요. 들었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법무부에서 자료 이·전용 과정에 대해서 해 가지고 전달해 주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부별 심사가 있으니 그때까지 좀 이종욱 위원한테 그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법무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제처 다 들어오셨지요?

○**법제처차장 최영찬** 예.

○**소위원장 유상범** 시작하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법제처차장 최영찬** 법제처 차장 최영찬입니다.

○**법제처기획조정관 안상현** 기획조정관 안상현입니다.

○**법제처기획재정담당관 오은하** 기획재정담당관 오은하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주성훈** 법제처에 대해서는 총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1건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법제처는 총액인건비 대상사업에서 2억 400만 원,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에서 2억 6700만 원 등 총 4억 71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는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법제처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주의 시정요구를 받고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2025년도에도 연도 말 예산 전용이 반복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제처는 예측 가능한 인력운영 수요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실히 반영하는 등 총액인건비가 적정 수준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관리하여 향후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에서 대상경비로의 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시정·주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법제처차장 최영찬** 의견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적하신 내용이 예산의 현실적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6회계연도 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인력운영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주의로 시정요구 유형을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이게 4억 7000만 원, 그렇지요? 왜 부족했지요, 인건비가?

○**법제처차장 최영찬** 이렇게 부족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2025년에 국외 유학 훈련하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당초 부처에 배정된 인원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부처 공동 경쟁으로 나가는 인원들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25년도에.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공동 경쟁이요?

○**법제처차장 최영찬** 예, 부처 간 공동 경쟁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이 그다음 해에 유학을 나가게 되는데……

○**이종욱 위원** 몇 명이나 보냈는데요, 몇 명이나?

○**법제처차장 최영찬** 이게 늘어난 게,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면 저희 전체가 한 11.8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동 경쟁으로 늘어난 것은 아마 4명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종욱 위원** 4명이 부처 간 경쟁해서 추가로 받아 왔다는 거지요?

○**법제처차장 최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사유는 말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 지침은 위반한 거지요? 사유는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제처차장 최영찬** 예, 비대상 사업에서 전용을 한 거니까요.

○**이종욱 위원** 작년에도 한 번 지적받았지요, 작년 결산에서도?

○**법제처차장 최영찬** 예,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 시기가, 저희가 그 지적을 받았을 시점에는 25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고 그런 거라서 그것을 낮춰서 편성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이종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재발방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24년도 결산 실적으로. 뭘 했습니까, 재발방지 대책으로?

○**법제처차장 최영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5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시기상 반영하기 어렵고요. 26회계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증액을 좀 시켜서 아마 올해는 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는 내용은 알겠고 어쨌든 지적을 한 번 받고 두 번째니까 제도개선이나 주의 두 개 중에서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에서 주의를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말씀드릴게요. 만일 그런 사안이 발생했으면 적어도 국회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언질만 줘어도 아마 이 부분이 이렇게 지적까지는 안 댔을 수 있었다. 예산 짤 때 이미 다 확정이 됐는데 추가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담당 상임위에서 미리 알게만 만들었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크네요. 이 부분……

말씀하세요.

○**법제처차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국회하고 소통을 조금 더 수시로 강화해서 미리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산 할 때 보면 다들 국회를 좀 너무 가볍게 본다는 느낌이 자꾸

됩니다.

법제처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관계자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분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전부 다 일어나서 하세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이운재**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이운재입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정상우입니다.

○**감사원기획담당관 안광용** 감사원 기획담당관 안광용입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 마상수** 감사원 예산담당 마상수라고 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훈** 감사원에 대해서는 총 2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2건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전산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원은 사무실 임차를 위해 편성한 1억 1500만 원의 집행 필요성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액 이월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감사원은 당초 편성 목적이 소멸하여 집행 필요성이 없어진 사무실 임차료 예산의 이월·집행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무실 임차료 예산 이월액의 집행 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 여기에는 주의·시정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동 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로 시정요구(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시정요구유형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주의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이준석 위원님의 시정요구 내용은 시정요구 셋째 줄 후단에 있는 사무실 임차료 예산 이월액의 집행 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분인데 현재 자료 요구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만 곧바로 제출될 예정이어서 시정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것은 시정 내용이 아니잖아. 그게 무슨 시정이야?

○**김성희 위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이미 그렇게 논의가 됐고, 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주의를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주의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배준영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이 일치됐고 부처 의견도 주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주성훈 같은 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원은 차세대 OASYS 구축사업 관련 낙찰차액 중 2억 1800만 원을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월했습니다. 이는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원칙적으로 불용하도록 하는 집행지침과 사고이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감사원은 낙찰차액을 원칙에 따라 불용 처리하고 사고이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차세대 OASYS 구축사업 관련 낙찰차액 이월액의 집행 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 여기에는 주의와 시정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아까와 동일한 내용인데요, 동 건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가 같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위원님의 시정요구 건은 두 번째 줄 후단의 차세대 OASYS 구축사업 관련 낙찰차액 이월액의 집행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그것도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고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시정요구(안)을 주의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김성희 위원 이의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도 부처 의견에 동의하므로 이 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정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게 맞나? 보고하라는 게 시정이 들어가면 뭐든지 다 시정으로 되겠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원은 수고한 게 없어서 수고했다는 말은 안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 관계자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 이형석** 기획조정관 이형석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기획조정관 오래 했네. 제가 오래 봐서 그냥 한마디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성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 대상은 1건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공수처 운영 인건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 대비 검사 외 인력 정원 비율이 2.4배에 불과해 검찰청 평균 3.64배, 대검찰청 6.95배 대비 행정지원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핵심기능 상당수를 외부 파견인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수처 운영 인건비는 정원 85명을 기준으로 편성해 현원과 차이로 2022년부터 매년 8억 원 이상이 불용됐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인건비 예산편성 시 정원이 아닌 결원 추이, 중도퇴직률 등 실적을 반영하여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편성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재승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여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예결위 공통사항인 연번 2번 인건비 예산 편성 개선 필요에 대해 주의 시정요구를 상임위에서 의결한 제도개선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결산을 보니까 인건비 예산이 86억인데 70억 쓰고 16억이 불용됐습니다, 81%. 인건비 예산 치고는 아주 이례적인 거거든요, 사실. 조직이 아직 확실하게 안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례적이고. 정원 기준으로 했는데 인건비 20%를 못 썼어요. 그리고 25년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매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개선 감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정원 관리라든지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성격상 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성희 위원 어쨌거나 24년에 검사가 11명 퇴임했지요. 그리고 25년에도 검사 결원이 13명이어서 전체 정원의 한 52% 정도 비는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잘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비어 있는 정원을 없다고 하고 예산을 청구할 수도 없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자리를 잘 잡고 부족한 결원들을 메꾸고 인원들을 다 메워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저는 요구하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말씀하세요.

○정태호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25면 지금 검사가 몇 명인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현재 결원은 2명이어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뿐만 아니라 행정 인원까지 결원이 되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진짜 제도개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 보는 거예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결원 상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24년 말 기준으로 검사 결원이 11명이었는데 그중에 7명은 24년 6월부터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가 연말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2025년도 5월이 되어서야 7명이 임용됐고 그사이 또 4명이 의원면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임용절차를 진행하느라고 2025년 12월이 되어서야 4명이 충원돼서 11명이, 2025년에는 사실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정태호 위원 공지를 할 것 아니에요, 그걸 공모라고 그러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경쟁률은 꽤 높은 편입니다.

○정태호 위원 꽤 높은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정태호 위원 이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아무래도 지금 공수처가 검찰청 검사와 달리 3년에 3회 연임 임기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태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뭔가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들어왔다가 나가 버리고 들어왔다가 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안정이 안 되고 전문성 자체도 전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다행히 공무를 하면 경쟁률은 높다고 그러니 내가 볼 때는 여기 와서 그냥 경력 관리하다가 나가서 어디 더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이걸 제도개선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희 공수처는 그래서 지금 계속 임기제로 되어

있는 감사의 신분을 검찰청 감사와 같이 정년 보장과 함께 적격심사제도로 바꿔 줄 것을 입법적으로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저는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종욱 위원 제도개선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임기제, 채용 방식의 문제니까 여기서 고른다 그러면 사업추진 방식 변경으로 시정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태호 위원 하여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니까……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시 불용액이 과다하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의 지적이니까 그것을 개선하라는……

○이종욱 위원 5년째 계속 그렇잖아요.

○소위원장 유상범 아니, 생긴 이래 매년 반복되고 매년 제도개선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거기서 인원이 충분치 않으니까, 적어도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정원보다 조금 적게 요청하는 데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늘 정원대로 과다하게 요청하고 상시 불용이 나오는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걸 제도개선으로 하라 그래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3년 연속 제도개선 얘기 받지 않았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그렇지요.

○소위원장 유상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종욱 위원님의 의견 지적도 상당히 타당하고, 되지도 않는 제도개선을 가지고 매년 지적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산 청구에 있어서 좀 더 전문가가 와서 제대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것은 결정은 보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지성수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 하정수 기획조정실장 하정수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재정국장 하태진 기획재정국장 하태진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재정기획과장 윤정경 재정기획과장 윤정경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착석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성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는 총 1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대상은 1건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국선대리인보수 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공익 목적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고 참고인 제도 활용이 저조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선대리인보수 사업은 5년간 불용·초과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보수 등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을 분석하여 수요에 맞게 예산 규모를 재산정하고 이를 정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반복 불용 및 임의집행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연속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항목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전문위원 주성훈 위원장님, 정부……

○소위원장 유상범 미안합니다. 나도 이제 좀 지쳐서 그래.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우리 재판소에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및 제도 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두 번째 말하는 거지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준영 위원 연속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항목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결국 2025년 1800만 원 전액을 불용한 것은 실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인 연구비가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과거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적정 예산 규모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최근 집행 실적과 예상 사건 수를 기준으로 필요한 수준만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주의를 요청하는데.

차장님, 왜 이렇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보통 참고인 연구비는 변론을 저희가 결정하고 변론을 열 때 거기에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참고인 선정을 하고 그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서 또는 재판 변론 과정에서 진술 이것을 요청하고 그 이후에 보수로 지급을 하는 게 참고인 연구비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회 정도 변론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탄핵과 권한쟁의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때는 참고인 선정이 없이 증인신문이나 이런 절차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론이 여러 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연구비가 전액 불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참고인 연구비가 전액 불용이 된 것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재판소원 도입으로 예전에 저희가 예정했던 변론을 열지는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변론이 일정 부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연구관 조사기일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기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그때도 여기에서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지적사항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를 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 봐야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니까 이것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다른 항목에서 갖고 와서 쓴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예측을 해서 매년 틀리고 그러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선고를 얼마나 하는지 그다음에 변론을 얼마나 실시하는지, 그때 비용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대강의 것을 예측은 할 수 있어도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고려해서 예산을 짤 때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불일치가 생기는 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공익, 그러니까 국선대리인이랑 참고인 다 합쳐도 어떤 해는 0건, 어떤 때는 1건, 어떤 때는 6건 이런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지금 참고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희 위원 참고인 제도 활용을 한 해에 두세 건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선대리인 선임도 한두세 건 정도 하시는 거지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이것 나와 있는 숫자는 뭔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공익 목적 국선대리인 선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국선대리인 선정을 할 때 요건이 일단 무자력이고, 그다음에 요건 구비가 명확하게 부적법하다라는 상황이 아니면 무자력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대부분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적인 것이고 공익 목적의 국선대리인 선임은……

○朴芝源 위원 아니,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익 목적 국선대리인 선임 말고 참고인 제도 활용 현황에서 21·23년에는 2건, 24년에는 3건, 25년 0건이라고 지적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성희 위원 예, 그렇고 그다음에 공익 목적 국선대리인 현황도 1건, 1건, 2건이 있는 데요. 이게 맞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충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 얘기는 1건인지 3건인지를 어떻게 맞추냐고요, 사람이. 그 해에 3건 생길지 0건 생길지를 맞춰서 예산을 잡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것 지금 제도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0건인지 3건인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보완이 안 돼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 그만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그러니까 보통 국선대리인은 무자력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140~150건 정도가 선정이 되고요.

○**김성희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공익 목적의 그것은……

○**김성희 위원** 예, 공익 목적.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그것은 무자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익 목적을 주장해서 국선대리인 선임 요청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요건을 검토해서 이게 진짜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주장인지 이런 것을 따져서 자력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 목적이 있을 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무자력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이 결정이 되면 공익 목적 여부를 저희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후순위로 밀리고 청구인이 주장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들여다보기 때문에 사실상 주장 자체도 많지 않고 그래서 건수 자체도 이게 조금 일반적으로 무자력으로 인한 국선대리인 선임보다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올해도 얼마나 신청했어요, 이것 예산?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국선대리인……

○**소위원장 유상범** 예.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국선대리인 올해 예산은 1억 900만 원이고요. 참고인은 작년에 1800만 원이 불용이 돼서 올해는 12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올해 얼마 썼어요?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올해 상반기에 조사기일에서 조금 썼는데 상반기 10월 달에 변론이 예정되어 있고 해서 그것은 1200만 원은……

○**소위원장 유상범** 얼마 썼으면 얼마라고 말을 해야지 자꾸……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아니, 얼마 썼냐고 물어보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상시 불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빨리 우리가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에 오래 있으니까 내가 다 아는데 매년 제도개선으로 갔어요. ‘저희들이 금액을 잘 맞춰 보겠습니다’ 하는데 차라리 조금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계 수치가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몇 명인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불용액을 좀 줄일 수는 있어 보이는데 그것 줄이지 않고 그냥 늘 그 액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저희가 한두 번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예산

집행과 편성에 있어서의 부주의라든가 어떻게 보면 약간 만연적인 예산 신청이에요. 태만까지라고 내가 평가하기는 적절치는 않고……

그래서 이것은 더 얘기 들어 봐야, 이것 내 기억에도 매년 했던 얘기에요. 내가 2020년부터 법사위에 있는데 계속 나왔던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정태호 위원 한번 물어볼 게 있어요.

○소위원장 유상범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정태호 위원 한번 물어보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 줄였을 때 갑자기 국선변호인의 필요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다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또 유상범 위원장님이 워낙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과다 편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니 차라리 확 줄여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아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혹시 돈이 없으면 이게 숫자가 더 늘어났을 때 대응수단이 없어 가지고 미리 좀 여유 있게 편성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지를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사무처사무차장 지성수 그런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국선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지출이 된 게 100만 원만 불용이 됐고요. 1억 27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국선대리인 보수로 책정된 건 1억 9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참고인 연구비로 1800만 원, 같은 세부내역에 있던 그게 불용이 돼서 그 부분의 일부를 국선대리인 선임 보수로 지급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불용으로 작년에 됐거든요.

그래서 국선대리인 선임은 계속 선임이 늘어나는, 선정을 해 줘야 되는 상황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게 불용과 초과 집행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불용만 되는 건 아니고요.

○소위원장 유상범 대체로 불용이 되고 가끔 초과되는 거지.

정리합시다, 이것 가지고 더 말씀 들어도 같은 내용이니깐.

○이종욱 위원 제가 한 번만, 10초만 말할게요.

불용을 최소화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이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선대리인이나 참고인 이런 걸 현재에서 하고 싶다고 막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예산 대응하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처에서, 이게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 요구하는 걸 좀 잘 받아 줘야…… 옛날에 제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좀 잘 받아 줘야 될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 예산은 막 10%, 20%씩 늘리면서 헌법기관들 10%, 20% 늘려 줬어요? 안 늘렸지요? 2%, 3% 했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건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잖아요. 현재가 국선대리인·참고인 막 불려다가 예산 낭비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자율성을 주고 나서 불용이 되겠다, 안 되겠다 따져야지. 돈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1800만 원. 자기들은 수백 억, 수천 억 막 쓰면서 헌법기관들한테는 돈도 안 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 또다시 똑같은 사안이 지적돼 가지고 또 올라오는데 매년 제도개선으로 반복돼서 이제 똑같은 시정 유형을 계속 반복하는 건 국회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주의로 줬는데 상임위 의견도 제도개선이니까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현재에서도 이게 사실은 의지예요, 의지. 의지기 때문에 예산을 하면 적극적으로 이걸 발굴한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안 기울이니까 이런 게 상습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익 목적의 국선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현재소장이 관심 있을 때는 그게 들어와.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사람 바뀌고 나면 거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실무진에서도 움직이지 않으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도를 할 때는…… 기획예산처에서 이것 하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현재에서 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획예산처, 18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습지 않아요?

○**기획예산처재정성과국장 정창길** 평소에 헌법기관의 예산 요구는 최대한 존중한다는 게 저희들의 일반적인 재정 우선 원칙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내년에 20% 인상해 주세요.

○**소위원장 유상범** 야당이 자꾸 여당처럼 말씀하지 마시고요.

(웃음소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분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실하신 대법원 관계자분들께서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하시는 거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입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조병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조병구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들어오신 분들 다 말씀하세요.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실 이성희** 결산 담당관 이성희입니다.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실 오동훈** 결산 사무관 오동훈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주성훈** 대법원에 대해서는 총 3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었으나 보고대상은 1건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은 2023년 착수한 이후 매년 사업이 지연되고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제도개선,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주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일정 지연과 계약변경이 3년 연속 반복됐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대법원은 반복적인 계약기간 변경과 과다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화사업의 일정·계약 관리를 포함한 사업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 여기에는 제도개선, 시정, 주의 세 가지 유형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대법원은 시정요구 단계를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 상임위 수준인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도 이월 예산 66억 9800만 원은 2025년 12월 18일 자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고, 2025년도 이월 예산 37억 1400만 원은 2026년 8월 4일 자로 15억 100만 원 집행하였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약체결 지연 및 계약기간 변경 등으로 예산 이월 등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시정요구 단계를 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이것 제가 법사위에 5년 있는 동안 매년 결산 때마다 나오던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 한 번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우종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 2023년 결산에서 제도개선 했고 24년 결산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주의로 됐고 이번에 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조치 완료했다고 하는데 아까 이월된 것을 8월 달에 집행한 게 조치 완료는 아니잖아요. 이월시켜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애로 사항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요? 잘 통제하기는 쉽지 않은 이슈이긴 한데 국회 입장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아무런 그런 개선되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의를 한 번 더 주나요? 시정으로 하나……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태호 위원**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 볼 수 있나요? 왜 이렇게 계속 이월되는 거에

요? 제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은데……

○소위원장 유상범 전체 예산 중에 이월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 한번…… 전체 예산 중에 이월액이 아주 많지는 않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형사전자소송 사업을 추진할 때 법원은 가장 광범위한 차세대 전자소송 사업을 같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과부하가 걸려 있었습시다.

이제 그 차세대 전자소송도 구축이 완료되었고 형사전자소송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 처음에 스케줄 관리를 잘 못한 거네요.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니까 매년 반복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위원들도 어떻게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이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이월이 되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됐다가 나중에, 이때는 아마 2024년도에는 굉장히 정국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세계 요구하고 숫자가 많으니까 그때는 또 주의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끝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

보니까 제가 시정을 지적했네요.

고생하는 게 있는데 말씀대로 주의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견 의결을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은 주의로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오늘 기 차장님 이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 여기서 해 놓고, 이것 다 남겨둔. 내년에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람 참 우스워져요. 그러니까 조금…… 법원에서 그렇게 치밀하게 모든 걸 하는 조직이 왜 이 사업만 하면 매번 이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잘 챙겨 보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관계자분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다음에 사무총장님 또 예산처의 국장님 이렇게 다 오셔서 수고 많이 하였고, 제가 세 분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각 안 중에 기재부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처 편을 들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 중에 이런 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로서의 조언이 필요해서 앉아 계시는 거지 우리가 부처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 방어를 위해서 앉아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문가로서의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실 부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일이랑 다음에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비 결산이 돼 있지 않은 걸 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임위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 해서 관심을, 옆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상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성희 박芝源 배준영 유상범 이종욱 정태호 허성무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주성훈

입법심의관 이재운

입법심의관 이윤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사무총장 정상우

기획조정실장 이윤재

특별감찰관

운영지원팀장 김선아

재정경제부

제2차관 허장

국고실장 황순관

법무부

차관 이진수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예술정책관 이용신

문화산업미디어정책관 김경화

성평등가족부

차관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최은주

성평등정책관 조민경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 정창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

기획조정관 이형석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

기획조정관 유승주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장 권승진

법제처

차장 최영찬

기획조정관 안상현

경찰청

차장 김종철

자치경찰기획단장 이영철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소방청

차장직무대리 김재홍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채수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김귀옥

상임위원 이호중

상임위원 장영수

기획운영관 김준희

10·29이대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장 강수상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중

기획조정실장 조병구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차장 지성수

기획조정실장 하정수

기획재정국장 하태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기획조정실장 옥미선

임시회의록